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지역구)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 사무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일러두기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 ▶ 공직선거법 법
- ▶ 정치자금법 정금법
- ▶ 공직선거관리규칙 규칙
-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정금규칙
-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 규칙 별지서식
-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서식 정금규칙 별지서식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인터넷규칙 별지서식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토론위규칙 별지서식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위원회
- ▶ 선거구 선거사무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할선거구위원회
- ▶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시·군위원회
-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위원회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입후보예정자

2.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법 및 규칙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각급 위원회와 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신고·제출·보고 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3.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발간·배부하는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정당 및 후보자는 정치관계법 외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Contents

제1편 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

I.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6
2. 선거권자	6
3. 후보자등록	7
4. 선거운동	7
5. 선거비용	9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2

II. 후보자등록 신청

1. 후보자등록 요건	18
2.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19
3. 후보자등록 신청	31
4. 후보자사퇴 신고	34
5. 후보자 기호 결정	35
6.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작성요령	35

III.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40
2.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40
3.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43

제2편 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정당활동의 제한

I.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 일반	49
1. 선거운동의 정의	49
2. 선거운동기간	49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52
4. 선거운동기구	53
5.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55
6.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	58
제2절 선거운동 방법	60
1.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60
2. 신문·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68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71
4.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73
5. 그 밖의 선거운동	79
6.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	85
7.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85

II. 선거관련 정당활동의 제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90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91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93
4. 정책공약집 배부	93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9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96
7. 당원집회 개최	97
8. 당원모집 금지	98
9. 당사게시 선전물	99

제3편 정치자금

I. 정치자금 일반

1. 정치자금의 의의	107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110
3. 예금계좌 신고	111
4.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12
5.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	114
6.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114

II. 선거비용의 보전·반환 등

1. 선거비용의 보전	117
2. 위법비용 등 보전제한	119
3.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	121
4.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121
5. 반환기탁금·보전비용의 인계	122

부 록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 제출사항 목록	125
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126
3. 각종 신고·신청 제출 서식 목록	156
4. 선거여론조사 안내	218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228
6. 선거사무관계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232
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표	234

제 1 편

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



I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I.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구 분	주 요 일 정
2019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12. 7.까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12. 7.까지) » 예비후보자 등록(12. 17.부터 2020. 3. 25.까지)
2020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후보제한직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1. 16.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1. 16.부터 선거일까지)
2020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등록 신청(3. 26.~3. 27.)
2020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기간개시일(4. 2.) / 선거운동기간(4. 2.~4. 14.) » 선거벽보 제출(4. 1.까지) » 재외투표(4. 1.~4. 6.) » 선거공보 제출(4. 3.까지) / 선거인명부 확정(4. 3.) » 선상투표(4. 7.~4. 10.) » 사전투표(4. 10.~4. 11.) » 투표 및 개표(4. 15.) » 선거비용 보전청구(4. 27.까지)
2020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탁금 반환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제출(5. 15.까지)
2020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 보전(6. 12.이내)

1 선거일 및 임기

가. 선거일 : 2020. 4. 15.(수)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나. 선거기간 : 2020. 4. 2.(목) ~ 4. 15.(수) **14일간**

다. 임 기 : 4년(2020. 5. 30. ~ 2024. 5. 29.)

2 선거권자

가. 선거권이 있는 자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0. 3. 24.) 현재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이 경우 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함.

나. 연령산정기준일 : 선거일 현재(2002. 4. 16.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3 후보자등록

가. 등록기간 : 2020. 3. 26.(목) ~ 3. 27.(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나. 기탁금액 : 1,500만 원

※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의 기탁금액은 이미 납부한 기탁금액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00만 원임.

다. 기호결정

-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후보자(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천)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표시함.
- (2) 다만,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함.

4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기간 : 2020. 4. 2.(목) ~ 4. 14.(화) 13일간

나. 선거운동의 정의

- (1)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라) 통상적인 정당활동
 - (마)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 (1)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20. 4. 1.(수)까지 예비 후보자의 신분으로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음.
-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5 선거비용

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

2019. 12. 6.(금)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 선거구역 변경 또는 인구수의 현저한 변경 등 사유 발생시 재산정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 공고함.

나. 선거비용의 정의

- (1)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해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 (2)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등

다. 선거비용 보전

- (1)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20. 4. 27.(월)까지 선거일 후 10일까지
- (2) 선거비용 보전 : 2020. 6. 12.(금)이내 선거일 후 60일 이내

6 투표 및 개표

가. 선거일 투표

- (1) 투표시간 : 2020. 4. 15.(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2) 투표대상
 - (가) 거소·선상·사전 및 재외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 (나) 선상투표기간 개시일(2020. 4. 7.)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로서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한 사람

(다)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 부재자 신고인으로서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한 사람

- (3) 투표절차 : ① 투표소 입소 → ② 본인여부 확인(선거인명부 서명·날인·손도장) → ③ 투표용지 수령 → ④ 기표소에서 기표 → ⑤ 투표함 투입 → ⑥ 퇴소

나. 개 표

- (1)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2)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검사 후 개함
 (3) 개표절차 : ①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개함부) → ② 투표지 분류(투표지 분류기운영부) → ③ 투표지 심사·확인·집계(심사·집계부) → ④ 개표 상황표 확인 → ⑤ 후보자(정당)별 득표수 검열 → ⑥ 위원장 공표

● 선거일 투표 외 투표 방법

■ 사전투표

- ▶ 투표기간 : 2020. 4. 10.(금) ~ 4. 11.(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는 추가 설치)
- ▶ 투표대상 : 거소·선상투표 및 재외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참고 사전투표 시 관내/관외 선거인의 구분은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을 기준으로 함.

■ 재외투표

- ▶ 투표기간 : 2020. 4. 1.(수) ~ 4. 6.(월) 기간 중 재외위원회별로 정하는 6일 이내의 기간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 투표장소 : 재외위원회에서 설치한 재외투표소
- ▶ 투표대상 :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한 사람
- ▶ 투표회송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국내회송(외교행낭)

■ 거소·선상투표

▶ 투표기간 및 장소

- 거소투표 : 거소투표신고인은 거소지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 후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등기우편 발송
- 선상투표 : 선상투표신고인은 2020. 4. 7.(화) ~ 4. 10.(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해당 선상투표소에서 투표 후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 이하 같음)로 직접 해당 시·도위원회에 송부

▶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규칙 별표1)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
 - 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②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③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7 당선인 결정

가. 지역구국회의원

- (1)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 (2)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함.

나. 비례대표국회의원

-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함)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함.
-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은 다음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함.
 - (1) 30석에 대해 의석할당정당 배분 총의석 산정
 - (가)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연동배분의석 수”라 함)는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함.

$$\text{연동배분 의석수} = \frac{\left[\left(\frac{\text{국회의원 정수}}{\text{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right) \times \frac{\text{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text{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right]}{2}$$

사 례						
구분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등	합계
지역구당선인수	100석	80석	40석	30석	3석	253석
비례득표비율	40%	30%	10%	20%	-	100%
연동배분의석수	9석	5석	0석	15석	-	29석

※ A당 연동의석수 = $\frac{[(\text{국회의원정수 } 300 - \text{무소속 등 } 3) \times \text{A당 비례득표비율 } 40\% - \text{A당 지역구 } 100]}{2}$
 (결과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1보다 작으면 0)

(나) 위 (가)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에는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잔여배분의석수”라 함)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함.

$$\text{잔여배분의석수} = (30 - \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times \text{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사 례						
구분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등	합계
비례득표비율	40%	30%	10%	20%	-	100%
연동배분의석수	9석	5석	0석	15석	-	29석
잔여배분의석수	1석	0석	0석	0석	-	1석

※ A당 잔여의석수 = [비례정수30 - 29(A연동9 + B연동5 + C연동0 + D연동15)] × A당 비례득표비율40%
(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

(다) 위 (가)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조정의석수”라 함)를 각 연동배분의석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함.

$$\text{조정의석수} = \frac{30 \times \text{연동배분의석수}}{\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사 례						
구분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등	합계
연동배분의석수	13석	12석	8석	10석	-	43석
조정의석수	9석	8석	6석	7석	-	30석

$$\text{※ A당 조정의석수} = \frac{30 \times \text{A당 연동13}}{\text{각 정당 연동 합계43}}$$

(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17석) : 17석에 대해 각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을 해당 정당에 배분함.

사 례						
구분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등	합계
비례득표비율	40%	30%	10%	20%	-	100%
배분의석수	7석	5석	2석	3석		17석

※ A당 배분의석수 = $17 \times A$ 당 비례득표비율40%

(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

- (3) 중앙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함.

II

후보자등록 신청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후보자등록 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후보자등록 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일체

본 안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선거운동과 신고·제출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후보자등록 등 각종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등록 요건

- ▶ 선거일 현재 25세(1995. 4. 16. 이전 출생자) 이상 국민
-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2020. 1. 16.(목)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입후보 가능
 -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2019. 12. 17.(화)까지 사직해야 하고,
 -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2020. 3. 16.(월)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 ▶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

■ 후보자등록

- ▶ 등록서류 사전 검토
 - 기 간 : 2020. 3. 25.(수)까지
 - 장 소 : 관할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등록신청서류,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의 원고 및 기타 입후보예정자가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
- ▶ 후보자등록
 - 등록기간 : 2020. 3. 26.(목) ~ 3. 27.(금) **매일 09:00 ~ 18:00**
 - 접 수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기탁금 납부

- ▶ 납부금액 : 1,500만 원
 - ※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200만 원)을 납부
- ▶ 납부방법 : 후보자등록 신청 시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기탁금계좌에 후보자 명의로 무통장입금 후 입금표 제출

Ⅱ. 후보자등록 신청

1 후보자등록 요건

가.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법 제16조·제53조)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1995. 4. 16. 이전 출생자) 국민으로서 아래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90일[2020. 1. 16.(목)]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함(법 제53조제1항).

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9조)

(1) 선거법, 정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법 시행(2004. 3. 12., 정금법 제49조는 2005. 8. 4.)전에 상기 밀출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2004. 3. 12.) 제6조, 부칙(2005. 8. 4.)제5조].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이 실효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 다만, 2014. 2. 13. 전에 “(5)”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2014. 2. 13.)제8조].

2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가. 후보자 추천

(1) 정당의 후보자 추천(법 제47조·제50조·제57조의2)

(가) 추천인원 : 선거구별 1명

(나) 추천방법

-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는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
- 정당은 추천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Tip ■ 정당이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후보자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함(법 제57조의2).

-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 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 취소 외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함.

(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 **붙임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다]

(2)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법 제48조)

(가) 추천권자 :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나) 추천인원 : 300명 이상 500명 이하

(다) 추천방법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검인·교부한 추천장 서식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음.

(타)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

- 신청기간 : 2020. 3. 21.(토) ~ 3. 27.(금)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 추천장 검인 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음.

- 신청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신청서식 : **붙임 3**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나]

● 유의사항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거나 추천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됨.
-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선거권자의 추천인수가 하한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이 무효됨).
- 추천장 서식 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 명단의 "주소"란에 동지역의 도로명 주소 기재 시 행정동명(○○동)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고,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추천하는 사람의 손도장은 허용되지 아니함.
 - ※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함.
-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받을 수 있음.
-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나. 후보자등록신청 첨부서류 준비

(1)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작성(법 제49조제4항제2호)

(가) 신고(산정)기준일 : 2019. 12. 31.(화)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나) 신고범위

- 후보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후보자의 직계존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
 - ※ 혼인한 여성후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함.
-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및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포함
 - ※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대상 아님.

(다) 신고서식 : 붙임 4 [명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내)]

(라)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② - 나.” 참조

※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함.
이 경우 신고서 “비고”란에 “고지거부”라 기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등록대상재산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기준일 이전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사망한 경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기준일 후에 사망한 경우는 신고대상임.
- 오빠와 주거(세대)를 같이 하는 미혼여성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오빠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며느리와 계부·계모는 직계 존·비속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 생모가 재혼하였을 경우 생모는 직계 존속이므로 신고하여야 하며 재혼하여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지거부 가능함.
-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도 그 소유재산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 목장의 가축(소, 말 등),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 수목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님.
-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나, 운전교습용 자동차 및 학원 건물은 신고대상임.
-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상가권리금은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슈퍼 등 장사를 하는 경우 외상미수금은 채권으로 간주하므로 “채권”란에 기재함.

(2)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작성(법 제49조제4항제3호)

(가) 신고기준일 : 2020. 2. 26.(수) **후보자등록일 전 1개월 현재**

※ 다만, 미필자(병역준비역, 징·소집대상, 복무중인자)는 신고기준일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를, 병역사항의 변동이 없는 군필자·면제자는 신고기준일 전 또는 이후 발행한 병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나) 신고대상자

- 후보자(여성후보자도 신고하여야 함)
- 후보자의 18세(2002.12.31. 이전 출생) 이상인 직계비속(아들·손자·외손자)
 - ※ 후보자를 제외한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직계비속)은 신고대상자가 아님.

(다) 신고사항

구 분	신 고 사 항
○ 18세인 신고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자	병역판정검사년도 및 병역처분 내용
○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인 경우), 입영연월일, 전역·소집 해제 연월일 및 전역·소집해제 사유
○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중인 사람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인 경우),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편입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병역판정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 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
○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 유의사항

- 신고대상자(후보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가 비공개대상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 사유(혼인외의 출생자, 혼혈인, 고아)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그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서식의 비고란에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라고 적음.
- 신고기준일에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전에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이 사망한 경우 병역사항 신고대상이 아님.
- (외)손자의 신고대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자는 (외)손자가 등재된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반드시 “공직자(등)신고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라) 신고서의 첨부서류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복무중인 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 ※ 병적증명서 발급신청 시 ‘공직자(등) 신고용’ 용도로 신청하여야 함.
- ※ 병적증명서에는 복무부대(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기재되어야 하고, 복무 중인 군인이 발급받는 복무확인서에는 병과 및 군사특기가 기재되어야 함.

(마) 신고서식 : **붙임 5**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바)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2** - 다.” 참조

- ※ 병역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 신청권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당해 선거구의 선거인
 - 신청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신청방법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함.
 - 처리절차
 - 병무청장에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함.
 - 확인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고의누락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함.

(3)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작성(법 제49조제4항제4호)

(가) 신고대상기간 : 최근 5년간

(나)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건당 10만 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됨.
- ※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세액” 란에 “신고거부” 라고 기재함.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득세 등 납부·체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

(다) 신고서식 : **붙임 6**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채)]

※ 세무서 및 구·시·군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되, 증명서는 별도 제출하지 않음.

(라)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2** - 라.” 참조

(마)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체납증명 신청서 : **붙임 6-1**, **붙임 6-2**

(바) 납세실적증명서 발급

- 시 기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월(2020. 2. 26.) 이후
- 세금별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

구 분	발급대상기간	발급증명서명	발급기관
소득세	2014년~2018년도 발생분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전국 세무서
종합부동산세	2015년~2019년도 발생분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2015년~2019년도 부과분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 관할 구·시·군청

※ 신고대상기간 중 타 지역에서 매도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관할 구·시·군청에서 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 ▶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신청 시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 서식에 따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해야 함.
 - ▶ 5년간의 납부세액과 체납세액이 연도별로 각각 구분되도록 기재하고, 체납액의 완납일자와 발급당시 현재의 체납액을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함.

(4) 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법 제49조제4항제5호)

(가) 신 청 자 :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

(나) 신청시기 : 2019. 11. 4.(월)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

(다) 신 청 처 : 국가경찰관서의 장

(타) 발급신청·조회대상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정당이 본인 또는 소속
당원대상 조회

(마)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바) 신청서식 : **붙임 7**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사)]

(사) 유의사항

- 범죄경력 조회신청 시 해당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회보해야 하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열람 가능
- 경찰청의 ‘전과기록 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는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작성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 조회

(아)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붙임 7-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가)]

※ 첨부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 으로 발급된 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학력증명서의 발급(법 제49조제4항제6호)

(가)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붙임 8**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타)]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학력 증명서류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학력 증명서류의 발급

- 제출대상 학력증명서
 -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에서
 -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를,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 등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각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 모두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선거벽보 등에 □□대학교 졸업이하의 학력만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교의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수료·중퇴 당시의 학교명)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함.
 -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학점·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학력을 기재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학교 부설 ○○교육원) ◇◇학사학위 취득”으로,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으로, 학점 이수 중인 때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교 부설 ○○교육원) ◇◇학사과정 이수중”으로 기재하여야 함.
- 정규학력이 있는 사람은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 불가함(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을 ‘미기재’ 로 기재할 수 있음).

● ‘학력증명서’란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 포함), 수료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 원본 포함) 그 밖에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번역기관 또는 개인번역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문번역기관은 번역사자격증을 가진 번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개인번역사의 번역문을 첨부할 경우 “번역사자격증 사본”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에 따른 번역능력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한글번역문도 가능하며, 이 경우 경력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작성(법 제49조제4항제7호)

(가) 신고대상 경력 :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교육의원선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한 경력

※ 교육감선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1991. 6. 20.)(법률 제4347호, 1991. 3. 8. 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 교육감선거부터

※ 교육의원선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06. 12. 20.)(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에 따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선출한 교육의원선거부터(제주 특별자치도는 제4회 지방선거부터이며, 교육위원선거 입후보 경력은 제출대상 아님)

(나) 신고내용 : 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당선 또는 낙선여부

(다) 제출서식 : 붙임 9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따)]

※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타)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2-마.” 참조

(7)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법 제49조제4항제1호)

※ ‘상세증명서’ 를 발급 받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는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 3대에 한하여 가족사항이 나타나므로 조부모 및 손자녀(18세 이상의 외손자 포함) 등 다른 직계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산·병역·세금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직계존·비속이 등재된 다른 가족(조부모의 경우에는父, 손자녀의 경우에는 아들 또는 딸)의 ‘가족관계증명서’ 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8)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법 제53조제1항·제5항)

- (가) 발급신청자 :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자
- (나) 발급신청처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 (다)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법 제53조)

1. 선거일 전 90일(2020. 1. 16.)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법 제53조제1항)

-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 ※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됨(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 위 공공기관의 정부지분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입후보제한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부지분 확인방법 ✪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접속 ▷ 상단의 통합검색창에서 해당 기관명 검색 ▷ '정기공시' 클릭 ▷ '자본금 및 주주현황' 클릭 ▷ 정부지분 확인

-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직원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2. 선거일 전 30일(2020. 3. 16.)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법 제53조제2항)

- ▣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3. 선거일 전 120일(2019. 12. 17.)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법 제53조제5항)

- ▣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사직인정시점 :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9) 기탁금의 납부(법 제56조, 규칙 제24조)

(가) 납부금액 : 1,500만 원

※ 예비후보자가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납부한 기탁금(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200만 원)을 납부

(나)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 시

(다) 납부방법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신청자의 명의로 무통장(이체)입금한 후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이체확인증) 제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음.

●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 기탁금의 반환

▣ 반환요건 및 반환금액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기탁금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되, 과태료와 대집행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중앙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반환기한 : 2020. 5. 15.(금) 이내 **선거일 후 30일 이내**

- ▶ 반환방법 :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 ※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 시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 기탁금의 국가 귀속

- ▶ 귀속사유 : 법 제57조제1항의 반환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 귀속금액 : 반환하지 아니한 기탁금
 - ※ 기탁금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사람은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부담비용 전액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제5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541, 2018. 1. 25.)되어 개정시한(2019. 6. 30.)만료로 효력상실됨에 따라 추후 법 개정시 별도 안내 예정

3 후보자등록 신청

가. 등록기간 : 2020. 3. 26.(목) ~ 3. 27.(금)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함.

다. 등 록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라. 신청서식 : 붙임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마. 등록신청서류 목록

서 류 명	수 량 (부, 통)	비 고
❁ 후보자등록신청서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나)
❁ 첨부서류		
▪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정당추천후보자)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다)
▪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무소속후보자에 한함)	추천인수를 충족하는 매수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가)

서 류 명	수 량 (부, 통)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외에 다른 직계존·비속(18세 이상의 외손자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각 1	<p>구·시·읍·면의 장 발행</p> <p>☞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병역사항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각 1	소속기관의 장(소속위원회)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각 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	<p>「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p> <p>☞ 반드시 “공직자(등)신고용”으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 증명에 관한 신고서 	각 1	<p>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차)</p> <p>☞ 신고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	<p>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카)</p> <p>(회보서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발행)</p> <p>☞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방송원고제출서 (텔레비전, 라디오) 	각 2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상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5×7cm의 천연색으로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전자과일 동시 제출) 	2매	경력방송·자료발간 및 언론제공용

※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는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함(법 제49조제5항).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장의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보는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영은 제출하지 않고 이미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영을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영으로 함.

바. 등록무효사유(법 제52조)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추천인이 하한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신고서 및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 ※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 서식 : 붙임 10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법 제53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사직기한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포함),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등록한 때
 - ※ **법 제57조의2②**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①·②에 따른 교원을 제외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제①·②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①·②에 따른 교원이라 함은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말함.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 (이 경우 모두 무효로 됨)

4 후보자사퇴 신고

가. 신고시기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나. 신고처 : 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해당 선거구위원회

다. 신고방법

- (1) 후보자 자신이 직접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 (2)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신고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5 후보자 기호 결정

가. 결정시기 : 2020. 3. 27.(금) 후보자등록마감일 오후 6시 이후

나. 결정기관 : 관할선거구위원회

다. 결정방법

- (1) 2020. 3. 27.(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계재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하되,
 - (가)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다수 의석순(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한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2 이상의 정당이 같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 (나)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소속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 (다) 무소속후보자 →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
- (2)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계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함.
 -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6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작성요령

◇ “부록 2” 참조

Ⅲ

투표 및 개표참관 등

● 개 요

■ 투·개표참관인 신고

▣ 후보자(정당)별 참관인 신고인원

투 표 참관인	선거일 투표소	후보자마다 투표소별 2명
	사전 투표소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 2명
개 표 참 관 인		구·시·군마다 후보자추천정당 6명, 무소속후보자 3명

▣ 신고기한 및 신고처

구 분		신고기한	신고처
투 표 참관인	선거일 투표소	2020. 4. 13.(월)까지	읍·면·동위원회
	사전 투표소	2020. 4. 8.(수)까지	읍·면·동위원회
개 표 참 관 인		2020. 4. 13.(월)까지	관할구·시·군위원회

■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 ▣ 선거권이 없는 사람(법 제18조제1항)
- ▣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법 제53조제1항)
 - ※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으나, 투표참관인은 될 수 없음.
 -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0. 1. 16.(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개표참관인은 제외).

Ⅲ.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법 제46조, 규칙 제18조)

가. 신청권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나. 신청처 : 해당 구·시·군의 장

다. 신청기한 : 2020. 4. 2.(목)까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라. 신청수량

후보자마다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 1통(신청이 있는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교부)

☞ 누구든지 교부된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신청서식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데]

바. 비용부담

해당 구·시·군의 장이 공시한 명부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 작성비용을 교부 신청 시 신청자가 납부

2 투표참관인 선정·신고(법 제161조, 제162조, 규칙 제88조)

가. 신고권자 : 해당 선거에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포함)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나. 신고기한

(1) 투표참관인 : 2020. 4. 13.(월)까지 **선거일전 2일까지**

(2) 사전투표참관인 : 2020. 4. 8.(수)까지 **선거일전 7일까지**

다. 신고처 : 읍·면·동위원회

라. 신고인원

- (1) 투표참관인 : 투표소별로 2명
- (2) 사전투표참관인 : 사전투표소별로 2명

마. (사전)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2) 선거권이 없는 사람(법 제18조제1항)
- (3)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법 제53조제1항)
- (4)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0. 1. 16.(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법 제60조제2항).

바. 투표참관인 지정

- (1) 정 수 : 투표소마다 8명
- (2) 지정방법

(가) 신고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

- 선정·신고한 정당·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별로 우선 1명씩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
- 선정·신고한 정당·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선정인원은 8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

(나) 신고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

읍·면·동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

사. 사전투표참관인 지정

- (1) 정 수 : 없음
- (2) 지정방법

선정·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사람 밖에 없는 때에 읍·면·동 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

아.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투표일(사전투표기간 중)에는 투표소(사전투표소)에서도 교체가능]

자.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가)]

차. 교대참관

(사전)투표관리관이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대참관 가능

※ 교대 참관은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하여야 함.

카. 참관요령

- (1) (사전)투표참관인은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전)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2)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타. 금지행위 :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대표참관인 선정·신고(법 제181조, 규칙 제102조)

가. 신고권자 : 후보자 추천 정당, 무소속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나. 신고기한 : 2020. 4. 13.(월)까지 **선거일전 2일까지**

다. 신고처 : 관할구·시·군위원회

라. 신고인원 : 구·시·군마다 정당은 6명, 무소속후보자는 3명

-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명을 선정·신고할 수 있음.
- ※ 개표소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정당은 개표소마다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신고함.
- ※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만 선정한 경우에는 구·시·군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함.
- ※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위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대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음.

마. 대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2) 선거권이 없는 사람(법 제18조제1항)
- (3)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법 제53조제1항)

※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대표참관인이 될 수 있음.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대표참관인이 될 수 있음.

바.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사. 신고서식 : **붙임 14** [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가)]

아. 교대참관 : 구·시·군위원회가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대참관 가능

※ 교대참관은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하여야 함.

자. 참관요령

- (1)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 (2)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구·시·군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3) 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 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4)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통보할 수 있음.

제 2 편

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정당활동의 제한



I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13일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임.

- 2020. 4. 2.(목) ~ 2020. 4. 14.(화)

선거기간(14일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임.

- 2020. 4. 2.(목) ~ 2020. 4. 15.(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0. 4. 1.)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며,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라 할 수 있음.

I.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 일반

1 선거운동의 정의(법 제58조제1항)

가. 『선거운동』 이란(법 제58조제1항)

- (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2)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58조제1항 단서)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4) 통상적인 정당활동
- (5)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교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2 선거운동기간(법 제59조)

가. 선거운동기간 : 2020. 4. 2.(목) ~ 4. 14.(화) 13일간

나.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1)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20. 4. 1.(수)까지 예비 후보자 신분을 겸하며,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법 제60조의3)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 이하 같음)·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 함)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2020. 3. 30.)까지 우편발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음.

Tip ■ 자동 동보통신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붙임 15** [규칙별지 제15호의2서식의②]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함.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시 제한되는 행위(법 제82조의5, 규칙 제45조의4)**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 아래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라고 표시해야 함.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이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이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법 제60조, 제218조의14)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제218조의14)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2)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5) 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 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바124, 2018. 2. 2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6)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0. 1. 16.(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시작하여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7)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 후보자의 배우자 및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위 (4)부터 (7)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8)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9)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10) 법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선거운동기구

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법 제61조)

- (1) 설치권자 : 후보자
- (2) 설 치 수
 - (가) 선거사무소 :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1개소
 - (나) 선거연락소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1개소
- (3) 설치장소
 - (가)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함.
 -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인에는 설치할 수 없음.
 -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 (다)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 선거사무소 포함)의 사무소에 설치 가능함.
 - (라)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 가능함.

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변경)신고(법 제63조제1항, 규칙 제28조제1항)

- (1) 신고자 : 후보자
- (2) 신고처
 - (가) 선거사무소 : 관할선거구위원회
 - ※ 예비후보자가 설치·신고한 선거사무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함.
 - (나)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 소재지 관할구·시·군위원회

- (3)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 (4) 신고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개)]

다. 선거대책기구(법 제61조, 규칙 제27조)

- (1) 설치권자 : 정당
- (2) 설치장소 :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각 1개(설치신고 불요)

Tip ■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기구가 아닌 내부기구임.

라. 선거사무소등의 간판 등 설치·게시(법 제61조제6항, 규칙 제27조제3항·제4항)

- (1)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 (2)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 (3) 게재사항 :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 ※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간판 등에 게재할 수 있음.
- (4)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 ※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5)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마. 선거벽보 등 홍보물의 첩부(법 제61조제6항, 규칙 제27조제5항·제6항)

- (1) 종 류 :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의 사진
- (2) 첩부수량(책자형 선거공보는 부수를 말함)
 - (가) 선거사무소 : 각각 30매 이내
 - (나) 선거연락소 : 각각 20매 이내
 - (다) 선거대책기구 : 인쇄물 수량 및 후보자의 사진매수 제한 없음.
- (3) 첩부장소 :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5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 (1)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 (2)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Tip

-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추천할 수 있음.

※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될 수 있음. 다만, 정당 선거사무소에 정당추천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설치권자 및 설치수

- (1) 설치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 (2) 설치기간 : 2019. 12. 17.(선거일 전 120일)부터 2020. 5. 15.(선거일 후 30일)까지
 - ※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즉시 폐쇄하여야 함.
 - ※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구·시·군의 구역 안에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음.
- (3) 설치수 : 구·시·군마다 1개소
 - ※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Tip

-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하여 해당 구·시·군의 선거에 관한 정당 사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당선거사무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정당선거사무소는 해당 구사군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다.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안에는 설치할 수 없음.

라. 사무소의 간판 등

- (1)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 (2)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 (3) 게재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4) 설치·게시장소 :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 ※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5)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마. 사무소의 설치·변경 신고

- (1)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 (2) 신고처 : 관할구·시·군위원회
- (3) 신고사항
 - (가) 설치연월일
 - (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 (다)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라)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 (4) 신고서식
 - (가) 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붙임 17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 (나) 인영신고서 : 붙임 17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별지]

바. 소장 등의 선임

- (1) 선임인원
 - (가) 소 장 : 당원 중에서 1명
 - (나)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 (2)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 교체 시에는 그 때마다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여야 함.

사. 회계책임자 선임 등(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40조)

(1) 회계책임자 선임

(가) 인 원 수 : 1명

(나)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가) 신 고 자 : 정당선거사무소장

(나) 신고시기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 시

(다) 신 고 처 : 관할구·시·군위원회

(라) 신고서식 : 붙임 18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마) 신고 시 붙임서류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18 <별지>

● 예금계좌 신고서 : 붙임 18-1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3)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가)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 14일 이내

(나) 신고서식 : 선임신고서식과 같음

(다)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붙임 18-3 정금규칙 별지 제28호)

(4) 회계보고

(가)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나) 보고기한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 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의 회계보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6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법 제62조·제63조, 규칙 제28조)

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1) 선임인원

구 분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소	1명	선거사무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선거연락소	1명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 ※ 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음.
-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최초의 선임한 수를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 수의 2배를 넘을 수 없음(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교체선임횟수에 제한 없음).
- ※ 장애인(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음. 이 경우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일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을 포함함)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

- Tip**
-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장의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봄.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같은 정당추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정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실비(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일비, 식비)외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범위(규칙 제27조의3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장애인
 -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 시 지체 없이
- (3) 신고권자 및 신고처
 - (가) 선거사무장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각각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
 - (나)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가, 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은 선거연락소장이 각각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신고
- (4) 신고방법 : 서면으로 신고
- (5) 신고서식 : 붙임 19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내)]

나. 선거사무장 등 인영신고서 제출

- (1) 제출시기 : 선임 또는 교체신고 시
- (2) 제출처 및 제출매수
 - (가) 선거사무장의 인영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1매
 - (나) 선거연락소장의 인영 : 관할구·시·군위원회에 1매
- (3) 신고서식 : 붙임 20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다. 표지 (재)교부 신청

- (1) 교부신청 :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신고로 갈음
 - (2)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가) 신청서식 : 붙임 2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태)]
 - (나)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기재하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표지를 발급한 관할위원회에 신청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표지를 패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제2절 선거운동 방법

1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선거벽보(법 제64조, 규칙 제29조)

(1) 선거벽보의 작성

(가) 작성권자 : 후보자

(나) 작성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2020. 3. 23.(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작성·제출 수량 공고

(다) 작성방법

● 규격 : 길이 53cm, 너비 38cm

● 지질 : 100g/m² 이내의 종이

(라)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성명·기호

●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이라 기재)

● 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명단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후보자 외의 자의 인물사진은 게재할 수 없음.

(2) 선거벽보의 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4. 1.(수)까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제출마감일 18:00를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감일 24:00를 지나서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나) 제출장소 : 관할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다) 제출수량 :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라) 제출서식 : **붙임 22** [규칙별지 제17호서식의내]

(3) 선거벽보의 첩부

관할구·시·군위원회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섬·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

※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함.

(4) 선거벽보의 보완첩부

(가) 첩부권자 : 후보자

(나) 첩부사유 :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된 때

(다) 첩부방법 : 공고된 수량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첩부하되, 오손 또는 훼손된 선거벽보 위에 덧붙임.

※ 당초 첩부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첩부하여서는 아니 됨.

● 선거벽보 내용의 정정·삭제 신청(법 제64조제5항)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도 준용)

■ 원 칙 :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 정정·삭제 신청

▣ 사 유 :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된 경우

▣ 기 한 : 2020. 4. 1.(수)까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 방 법 : 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

※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서 식 : **붙임 23** [규칙별지 제17호서식의래]

나. 선거공보(법 제65조, 규칙 제30조)

(1)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가) 작 성 자 : 후보자

(나) 작성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다) 작성방법

●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지질 및 중량에는 제한이 없음.

● 작성분량 : 12면 이내

(라) 게재사항

● 앞면 게재사항 : 명칭(“책자형선거공보”), 선거명, 선거구명

●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후보자정보공개자료(필수)

➤ 게재내용

①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각 재산총액

②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 병역처분 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③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개월 이내의 체납 제외)

및 완납시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 실적은 제외]

④ 전과기록

후보자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실효된 형을 포함)

⑤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 국내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그 이하의 학력은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도 2개 이내에서 게재가 가능함.

⑥ 위 ① ~ ④(⑤는 제외)에 대한 소명자료

※ 소명할 내용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 게재방법 : “부록 2 - 바.” 참조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반드시 책자형 선거공보(접자형선거공보 포함)의 둘째 면에 작성하되,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소명자료만을 게재할 수 있음.

▶ 게재서식 : 붙임 24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다]

(2) 접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가) 작성자 : 후보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의무 작성·제출 대상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접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나) 작성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다) 작성방법

-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작성분량 :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12면)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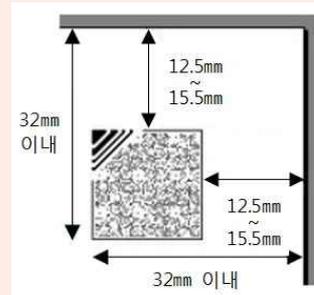
(타) 게재사항

- 앞면 게재사항(한글과 점자로 함께 기재) :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 성명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함.
 -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에 있어 점자를 해독한 내용을 그대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진·도표·도형 등을 포함한 후보자를 시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본래 작성취지를 벗어난 책자형 선거공보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
 - ※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 홀수면마다 바코드를 표시함.
 - ※ 책자형 선거공보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통합자료실-선거자료-선거·정당·정치자금)에 게시된 제작 프로그램(보이스아이 VOICEYE) 다운로드 활용 가능함 (후보자 부담비용 없음, 인쇄소 활용 가능).

●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작성 방법

※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 모양 : 정사각형
- 크기 : 가로와 세로 크기를 최대 18mm×18mm 이내로 함. [권장 크기 15mm×15mm]
- 위치 : 책자형 선거공보 우측 상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세로 32mm 크기의 정사각형 내에 위치하도록 함.
 - ※ 매 홀수면 우측상단에 표시



〈“우측 상단 위치” 그림 예시〉

- 해상도 : 최소해상도 300DPI [권장 해상도 600DPI]
- 색상 : 바코드 색상과 바탕색 구분을 위해 바코드 외곽 테두리 1mm 이상을 흰색으로 적용
- 코드 저장 데이터 : 문자와 숫자가 포함된 텍스트 형태로 저장
 - ☞ 음성변환 코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변환되어 출력되므로 반드시 문자와 숫자가 포함된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야 함.

(3) 선거공보(책자형·점자형)의 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4. 3.(금)까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나) 제출장소 : 관할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다) 제출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라) 제출서식 : **붙임 22**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내]

※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파일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책자형 선거공보 PDF 파일(20MB 이내)도 함께 제출

(4) 선거공보(책자형·점자형)의 발송

(가) 발송자 : 관할구·시·군위원회

(나) 발송방법 및 시기 : 2020. 4. 5.(일)까지

(5) 유의사항

(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부족 수량만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공보 제출마감일(2020. 4. 3)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인식이 용이한 ‘천공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함.

※ 점자형 선거공보를 타블로이드방식(일명 물방울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장애인단체의 요청이 있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됨(법 제52조제1항제11호).

(마)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제외)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에 게재하거나,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후보자의 학력

- ▣ 학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
 - ※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수료’ 등의 교육과정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을 게재하여야 함.
 -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 ▣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해야 함.
 - ※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 선거벽보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은 본문 “제1편. II. 2. 나. (5). (나) 증명 서류제출대상 학력”의 예에 의함.

■ 후보자등의 사진

선거벽보에는 후보자만의 사진을 게재하여야 하나, 선거공보에는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음.

■ 작성규격

- ▣ 책자형 선거공보는 길이 27cm, 너비 19cm의 규격 이내에서 크기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선거벽보(길이 53cm, 너비 38cm)는 법정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함.
 - ※ 선거벽보는 그 규격이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첩부하지 아니함.

■ 인쇄물 제출

- ▣ 제출마감일 18:00를 경과하여 제출한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감일 24:00를 지나서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 ▣ 선거공보 제출 시에는 수량 확인 및 운반 등이 용이하도록 500부 단위로 간지를 넣거나 묶어서 제출함.

- ▶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인쇄업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하는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음.
- ▶ 일부지역에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첩부 또는 발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역을 투표구 단위로 지정하여 선거벽보 등의 제출 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첩부·발송하지 아니할 지역을 해당 구·시·군위원회가 투표구단위로 지정함.

■ 위법내용에 대한 조치

- ▶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 등”이라 함)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사항이 거짓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동 공고문 사본을 길이 53cm, 너비 38cm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1매를 추가 첩부(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의 선거구 안에만 첩부)하며 사안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함.
 - ※ 선거벽보·선거공보의 경력등에 대한 이의제기 : **붙임 25**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매)]
- ▶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고 공고하며, 동 공고문 사본을 길이 53cm, 너비 38cm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1매를 추가로 첩부(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의 선거구 안에만 첩부)함.
- ▶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내용상 경력 등과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거나 비방내용을 이유로 고발하더라도 선거벽보 등은 그대로 첩부·발송함.
- ▶ 무소속후보자는 선거벽보 등에 당원경력의 표시는 가능하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때에는 위법행위의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함.
 - ※ 해당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 하는 사실을 표방하는 것은 가능함.

2 신문·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방송연설

(1) 후보자의 방송연설(법 제71조, 규칙 제36조)

(가) 연설기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나) 연설 횟수 등

연설자	연설시간 (1회)	매체별 연설횟수
후보자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 방송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지역방송시설”이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해당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함)을 말하며,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시·도로써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함.

(다) 연설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 포함)·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방영할 수 없음.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만,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해 방송되었던 방송연설을 방영하는 것은 가능함.

(라) 방송시설 및 일정 지정·공고·통보

- 지 정 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 지정·공고 : 2020. 3. 23.(월)까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까지**
- 통 보 : 후보자등록신청 시

(마) 방송연설 신고

- 신고자 : 후보자
- 신고기간 : 방송일전 3일까지
- 신고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신고내용
 - ▶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 등
 -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지정·공고한 방송시설·일시 등에 한함.
 - ▶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첨부
 - ※ 연설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방송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방송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야 함.
- 신고서식 : 붙임 2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라)]

(2)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법 제72조, 규칙 제37조)

(가) 방송주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 “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이하 같음).

(나) 방송기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다) 연설자 : 후보자

(라) 연설방송 :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마)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나. 경력방송

(1)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법 제73조, 규칙 제38조)

(가) 방송사 :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시설 포함)

(나) 방송기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송횟수 : 매회 2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이상

(라) 방송내용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이라 함)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마) 원고 작성·제출

● 제출기한 : 2020. 3. 27.(수)까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 후보자가 경력방송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따라 경력방송 원고를 작성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함.

● 제출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제출부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부

● 작성서식 : **붙임 27**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내]

※ 텔레비전·라디오 원고의 경력란 기재 시 경력을 전·현직으로 구분하여 경력
앞에 (전), (현)으로 기재 《예시 : (전) 국회의원》

[텔레비전방송용]

➤ 100자 이내(구두점 기타 문장부호 포함)로 작성하되, 원고 중 직업(1종), 학력
(1종), 경력(2종)의 자수는 각각 19자까지 작성 가능

※ (전)·(현)의 표기는 19자에 포함되지 않음.

➤ 사진(5cm×7cm)은 최근 3개월 이내 탈모상반신으로 촬영된 후보자만의
천연색 사진 [전자파일 (사진규격 등 - **붙임 27** <별지> 참조) 포함]

※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사진의 방영을 하지
않으며, 원고의 자수가 법정제한자수를 넘는 부분은 이를 방영하지 아니함.

[라디오방송용]

➤ 100자 이내에서 텔레비전용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

※ 원고의 자수가 법정제한자수를 넘는 때에는 넘는 부분은 방송하지 아니함.

- (바) 비용부담 : 한국방송공사
- (2)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법 제74조, 규칙 제39조)
- (가) 방 송 사 : 한국방송공사 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나) 방송방법 : 중앙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고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공평하게 방송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 (다)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제79조, 제102조, 규칙 제43조)

가. 연설·대담자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제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나. 연설·대담 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 연설·대담기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임.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연설·대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할 수 없음.

라. 연설·대담장소 :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과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 연설·대담 금지장소(법 제8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 다만, 위에 예시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허용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 철역 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마. 연설·대담 방법

- (1)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또는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 실시
- (2)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은 할 수 없음.
-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방문을 할 수 없음.

바. 자동차 및 확성장치 등의 사용

(1) 사용수량

구 분	연설·대담용 자 동 차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확성나발의 수)	휴 대 용 확성장치
후보자	1대	1조(1개)	1조
선거연락소	1대	1조(1개)	1조

(2) 차량설비 및 홍보물 등

(가) 자동차·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 설비

자동차·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등)으로 유상 제공·임대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될 수 있음.

(나)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후보자 사진 첨부

선거벽보·선거공보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공고한 수량 이내에서 첨부할 수 있음.

(3) 사용제한

- (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
- (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다) 휴대용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장소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해당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사. 녹음기·녹화기 사용

(1) 녹화기의 화면 규격 : 5m² 이내(후보자용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용)

(2) 방송 내용 :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

※ 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는 때에도 방송 가능

아. 자동차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의 표지 교부 신청

(1) 신청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2) 신청서식 : 붙임 28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재교부신청 :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붙임 28-1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

※ 교부받은 표지는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연설·대담하는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1조, 규칙 제44조)

(1) 대담·토론의 개념

(가) 대담 : 1명의 후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말함.

(나) 토론 :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함.

(2) 개최주체 :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단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법 제81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3) 개최기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4) 초청대상 : 후보자(1명 또는 여러 명)

(5) 개최신고

(가) 시 기 : 개최일전 2일까지

(나) 신고자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다) 신고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장소 소재지 관할구·시·군위원회

(라) 신고방법 : 초청할 후보자의 참석승낙서[붙임 29]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나)]를 첨부하여 신고[붙임 30]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가)]

(6) 초청 및 진행

- (가)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나) 대담·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함.
- (다) 대담·토론회 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 (라)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모욕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함.
- (마)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 정당·후보자 등은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언론기관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도 같음).

(7)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 ※ 대담·토론회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2조, 규칙 제45조)

(1) 개최주체

- (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나)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함)

- (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언론사
- (2) 개최기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 ※ 다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2020. 2. 15. ~ 4. 1.)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개최·보도할 수 있음.
- (3) 초청대상 : 후보자,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 (4) 진행방법(언론기관)
- (가)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함.
- (나)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되 특정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명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 (다) 대담·토론회의 참가자에게 주제발표시간, 맺음말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알려야 함.
- (라) 대담·토론 보도 시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마)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 (5)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

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 제82조의2)

- (1) 개최횟수 등

주 관	개 최 방 법	개최횟수	초청 대상자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이상	후보자

- (2) 개최기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3) 초청대상자 선정기준

- (가)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다)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 포함)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보궐선거등 포함)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0. 3. 3.~ 4. 1.)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4) 진행방법

(가) 대담·토론회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대상 후보자로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참석 여부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2020. 4. 3.)까지 참석확인서([붙임 31] [토론위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불참사유서([붙임 32] [토론위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해야 함.
- 초청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제지,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음.

(나) 합동방송연설회

- 합동방송연설회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함.
-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봄.

(5) 기타사항

- 위 (3)의 초청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위 (3)초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해당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윗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음(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8조).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등 영상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방송 및 다시보기를 할 수 있음.

5 그 밖의 선거운동

가. 현수막(법 제67조, 규칙 제32조)

- (1) 게시권자 : 후보자
- (2) 게시기간 : 2020. 4. 2.(목)부터 **선거운동기간개시일**부터
- (3) 게시매수 :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 (4) 재질·규격 : 천으로 제작하되, 10제곱미터 이내
- (5) 게시방법
 - (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서 교부받은 표지를 첨부하여 게시
 - ※ 훼손 또는 오손으로 현수막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첨부하여 게시함.
 - (나)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 불가
 - (다)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가리어지도록 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 불가
 - (라)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 없음.
- (6) 표지 (재)교부 신청서식 : **붙임 28**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붙임 28-1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나. 어깨띠 등 소품(법 제68조, 규칙 제33조)

- (1)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함), 선거 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 (2)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3) 종류 및 규격

종 류	규 격
어 깨 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윗 옷 (上 衣)	3만원 이내
마 스 코 트, 표 찰·수 기 그 밖 의 소 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법 제106조제2항)

-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 (2) 기 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 (3) 장 소 :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와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 (4) 방 법 : 법에서 제한·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라. 자동차·선박에 선전물 부착 운행(법 제91조, 규칙 제48조)

(1) 자동차·선박 사용대수 및 선전물 첨부수량

구분	사용대수	자동차·선박에 첨부할 수 있는 수량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표지
자 동 차	5대 이내	각 5매(1대당)	1매
선 박	5척 이내	각 10매(1척당)	1매

※ 단, 위 자동차·선박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운행할 수 없음.

(2) 표지의 교부신청

(가) 신청시기 : 선전물을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나) 신청자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다) 신청처 : 관할구·시·군위원회

※ 자동차 및 선박을 운행할 때에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라) 신청서식 : 붙임 28 [규칙 별지 제18호서식]**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4, 규칙 제45조의3)**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2) 기 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3)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4)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가) 주 체 :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및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사 유 :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

(다) 조치방법

-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요청

-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

(라) 후보자의 요청서식 : **붙임 33** [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

(6) 후보자 등의 위법게시물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

(가) 통보권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사 유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다) 통 보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라) 통보서식 : **붙임 34** [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

(마) 조 치 :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함.

※ 위 (5)·(6)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조치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7)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권자

- 위 (5)·(6)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조치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

(나) 이의신청기한

위 조치요청을 받은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

(다) 이의신청 방법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하고 날인한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
- 이의신청내용

(8) 이의신청신고(접수)처 : 삭제 등의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바. 인터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7, 규칙 제45조의5)

(1) 주 체 : 후보자

※ 위 주체 외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음.

(2) 매 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3) 기 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4) 내 용 :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5) 방 법

(가)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나)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명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피해구제(법 제8조의6)

■ 이의신청

- ▣ 신청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 ▣ 신청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 신청사유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신청기간 :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 신청서식 : 붙임 35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조 치 : 해당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하는 등의 피해구제

■ 반론보도 청구

- ▶ 신청권자 :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
- ▶ 신청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 신청사유 :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으나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신청기간 :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 ▶ 신청서식 : **붙임 36** [인터넷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조 치 : 심의를 통해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결정내용 통지
 - ※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One-Stop 피해구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 ※ 불공정 선거보도 사례,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iendc.go.kr) 참조

● 선거보도 심의 유관기관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 선거방송(TV, 종편채널, 라디오 등) 상의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정당·후보자의 피해 구제
- ▶ 피해상담 : 02-3219-5215, www.kocsc.or.kr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 신문, 잡지, 뉴스통신 등 정기간행물 상의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정당·후보자의 피해 구제
- ▶ 피해상담 : 02-397-3151~3, www.pac.or.kr

6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법 제218조의14)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함)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가.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 50쪽, 51쪽 ‘나.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2), (3)’ 참조

나. 선거운동기간중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법 제218조의14제1항)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218조의14제1항, 법 제82조의7) : 83쪽 참조

7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 ◇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참조

II

선거관련 정당활동의 제한

● 개 요

■ 정당의 자유와 활동 보장

- ▣ 정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치적 자유와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정당법은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선거관련 정당활동 제한 이유

- ▣ 정당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등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또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음.
- ▣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되,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의 형평성 유지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와 선거기간중에 행해지는 일부 정당활동에 대하여는 정당기능 및 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 선거관련 정당활동 제한 내용

- ▣ 정강·정책 신문광고 및 방송연설의 제한
- ▣ 정강·정책홍보물 및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 ▣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 ▣ 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 제한, 당원집회 개최제한
-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금지
- ▣ 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

Ⅱ. 선거관련 정당활동의 제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0. 1. 16.(목) ~ 4. 1.(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나. 제한내용

(1)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2)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더라도 1회로 봄.

(3) 매 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규 격 : 가로 37cm, 세로 17cm 이내(색도 제한 없음)

(5) 방 법 : 광고주명과 광고근거(“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를 표시

(6) 게재내용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자명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해당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다. 광고절차

(1) 인증서 교부신청

(가) 신청시기 :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

(나) 신청처 : 중앙위원회

(다) 신청서식 : 붙임 37 [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2)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라. 광고요금 산정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20. 1. 1.(수) ~ 4. 1.(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이 금지됨.

나. 제한내용

(1) 연 설 자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2) 횟 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별로 월 2회 이내

※ 연설횟수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3) 시 간 : 1회 20분 이내

(4) 방송내용

(가) 정당의 정강·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은 할 수 없음.

(나)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을 포함),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다)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 방송연설 절차

(1) 방송연설 계약체결(중앙당 ⇔ 방송사)

(2) 방송연설 신고

(가) 신고시기 : 방송일 전 3일까지

(나) 신고처 : 중앙위원회

(다) 신고서식 : 붙임 2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라)]

※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첨부

라. 비용산정 및 부담

(1)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해당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연설하는 경우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해당 공영방송사가 부담함.

※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연설의 경우 그 방송연설의 일시·시간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영방송사와 해당 정당이 협의하여 정함.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법 제138조, 규칙 제61조)

가. 제한기간 : 2020. 4. 2.(목) ~ 4. 15.(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 (1)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 (2) 종 류 :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
- (3)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
- (4)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 (5) 게재내용
 - (가)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나)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 홍보물 제출

- (1) 제출시기 : 배부 전까지
- (2)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 (3) 제출수량 : 2부(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4) 제출서식 : **붙임 38**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4 정책공약집 배부(법 제138조의2, 규칙 제61조)

가. 주 체 :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

나. 시 기 : **언제든지**

다. 발간횟수 : 제한 없음

라. 발간형식 : 도서형태로 발간

마. 게재내용 등

(1) 해당 정당의 정책과 선거공약

※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2) 정책공약집 앞면에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은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3) 정책공약집의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바. 판매방법

(1)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2)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장소(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에서의 판매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 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사. 정책공약집 제출

(1) 시 기 : 발간 즉시

(2) 제출처 :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위원회

(중앙당은 중앙위원회, 시·도당은 해당 시·도위원회)

(3) 수 량 : 2권(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4) 제출서식 : 붙임 38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법 제139조)

가. 제한기간 : 2020. 4. 2.(목) ~ 4. 15.(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1)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2) 발행횟수

(가) 통상적인 주기에 의하되, 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

(나) 증보·호외·임시판을 포함하며, 배부지역에 따라 게재내용 중 일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봄.

(3)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4)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 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 또는 민원실·마을회관·아파트 입구 등 비치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1) 제출시기 : 발행 즉시

(2) 제출처 : 중앙위원회

(3) 제출수량 : 2부(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4) 제출서식 : 붙임 38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가. 제한기간 : 2019. 12. 17.(화) ~ 2020. 4. 15.(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나. 대상집회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 ※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 등 집회를 말함.
- ※ 「후보자선출대회」라 함은 정당의 각급 당부가 법에 따른 선거의 해당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에 따라 개최하는 집회를 말함.

다. 제한내용

(1) 개최장소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

(2) 참석대상

(가) 소속당원에 한함.

- ※ 주최당부 명의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을 초청할 수 있음.

(나)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3) 개최장소 표지첩부

(가) 매 수 : 5매 이내

(나) 게재사항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7 당원집회 개최(법 제141조, 규칙 제63조)

가. 당원집회 신고 등

(1) 기 간 : 2020. 1. 16.(목) ~ 3. 15.(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

(2) 개최장소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3) 개최신고

(가) 신고시기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나) 신고자 : 주최당부

(다) 신고처 : 개최지역 관할구·시·군위원회

(라) 신고서식 : **붙임 39**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집회

-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4)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1매)를 반드시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그 밖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 등의 무료사용

(1) 대상정당

정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라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

(2) 대상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 시설의 손괴·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해당 정당이 보상하여야 함.

다. 당원집회 개최금지

(1) 금지기간 : 2020. 3. 16.(월) ~ 4. 15.(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2) 금지내용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 집회로 보지 아니함.

※ 법 제112조제2항제1호 바목의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는 당원집회 개최금지기간 중에도 개최 할 수 있음.

8 당원모집 금지(법 제144조)

가. 금지기간 : 2020. 4. 2.(목) ~ 4. 15.(수) 선거기간 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가능함.

9 당사게시 선전물(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가. 제한기간 : 2020. 4. 2.(목) ~ 4. 15.(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 (1) 선전물 : 간판·현판·현수막(수량·규격제한 없음)
- (2) 설치·게시장소 : 해당 정당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
 - ※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법 제61조 및 규칙 제27조에 따른 선전물 첨부·게시 가능함.
- (3) 게재내용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에 관한 사항

 - ※ 위 게재내용 외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4)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해당 정당의 사무소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제 3 편

정치자금



● 개 요

■ 선거비용의 제한 및 수입·지출

-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공고
 - 산정방법 : 인구수 및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적용
 - 공고시기 : 2019. 12. 6.(금) 기 공고
- ▣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 후보자등록신청시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담당할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
 - 회계책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
 - 회계책임자는 2020. 5. 15.(금) [선거일후 30일]까지 수입·지출 보고

■ 선거비용의 보전

- ▣ 보전요건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 보전청구
 - 청구기한 : 2020. 4. 27.(월) [선거일후 10일]까지
 - 청구처 : 관할선거구위원회(선거연락소는 관할구·시·군위원회)
- ▣ 선거비용 보전 : 2020. 6. 12.(금) [선거일후 60일]이내

I

정치자금 일반

I. 정치자금 일반

1 정치자금의 의의

가. 개요

-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준위를 포함함),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2)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법에서 선거비용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인 정치자금”과 그 밖의 모든 정치자금인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양분됨.
- (3) 이와 관련하여 정금법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 하는데 있어서 그 정치자금이 “선거비용”에 해당되는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나. 선거비용

- (1) 선거비용의 정의(법 제119조)
 - (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추천 정당 포함, (1)에서 같음)가 부담하는 비용
 - (나)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㉔)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㉕)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㉖) 위 (㉔) 및 (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㉔) 또는 (㉕)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2)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법 제120조, 제218조의15)
- (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나)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 비용
 -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 당내경선운동방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다) 선거에 관하여 국가 또는 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전화 설치비 및 그 전화요금은 선거비용에 포함됨.
 - (㉕)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㉖)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선박 포함)의 운영비용

- (사)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등의 비용
- (야)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 다음의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구입비용(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구입비용(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재) 선거일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 비용
- (차)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카)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
- (타)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소요된 비용(선거운동이 아님)
- (3)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공고(법 제121조, 제122조)
- (가) 산정방법 : 1억원 + (인구수 × 200원) + (읍·면·동수 × 200만 원)
-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 원을 가산함.
- ※ 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 원으로 함.
- ※ 국회의원선거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함) 4.7%를 적용함.
- (나) 공고시기 : 2019. 12. 6.(금) 기 공고
- ※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재공고함.

다.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1)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임.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있는 때마다 ‘선거비용’ 과목과 별도로 구분하여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으로 회계장부를 기재하여야 함.
- (2)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일지라도 선거일 후 보전하지 않으며, 선거일 후 30일까지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회계보고하여야 함.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 (1) 인 원 수 : 1명
- (2)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 다만, 이미 어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된 사람은 다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나. 회계책임자 선임(겸임)신고

- (1) 신 고 자 : 후보자(선거연락소의 경우 선거연락소장도 가능)
- (2) 신고시기
 - (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후보자등록 신청 시
 -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봄.
 - (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 선거연락소 설치 신고 시
- (3) 신 고 처
 - (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 (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 관할구·시·군위원회

- (4) 신고서식 : **붙임 18**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5) 신고 시 붙임서류
- (가) 예금계좌 신고서 : **붙임 18-1**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나)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18** <별지>
- (다)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18-2**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하며, (예비)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함.
- (6)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뜻을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음.

다.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1) 변경신고 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 (2) 신고서식 : **붙임 18**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3) 신고 시 붙임서류
- (가) 위 “(5)-(나), (다)”의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및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18-3**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3 예금계좌 신고(정금법 제34조·제36조)

가. 신고자·신고처 : 회계책임자 신고와 같음.

나. 신고시기 :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시

다. 신고방법

- (1) 예금계좌 신고는 회계책임자 신고 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 [**붙임 18-1**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2)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 예금계좌는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후보자 자신의 자산(차입금 포함), 소속 정당의 지원금품,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품,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지원금(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함)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 (1) 선거비용
(2)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선거사무소 유지비등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정치자금으로 수입·지출처리하여야 함.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 (1) 수입·지출담당자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임.

※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함)는 그 위임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단, 수입의 경우 위임 불가능)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별도의 서면 위임 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2) 모든 정치자금은 반드시 관할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함.

- (3) 정치자금은 보조금인 지원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후보자의 자산계정, 후원회 기부금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과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 보조금(경상·선거·여성추천·장애인추천)과 보조금외(당비, 기탁금 등)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후보자의 자산은 후보자의 자산과 후보자의 차입금 등을, 후원회 기부금은 당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을 말함.
- (4)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5) 회계책임자가 위 (4)의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관할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등을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함.

라.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 (1) 보고의무자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 (2) 보고기한 : 선거일후 20일(2020. 5. 5.) 현재로 선거일후 30일(2020. 5. 15.)까지
- (3) 보고내용 :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 참조

마. 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정금법 제44조)

- (1) 회계장부 등의 인계
- (가) 시 기 :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 (나) 인계·인수자 : 회계책임자가 선임권자에게
- (다) 인계서류 :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등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
- (2) 회계장부 등의 보존
- (가) 보존기간 :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나) 위탁보존 : 회계책임자가 선임권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위원회에 회계장부 등의 보존을 위탁할 수 있음.

5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정금법 제43조·제52조)

가. 조사기관 : 각급 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위원·직원

나. 조사시기

- (1) 정치자금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 (2)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회계보고내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

다. 조사 방법 : 질문·조사, 자료제출 요구,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 증거물품 수거, 동행 및 출석요구, 장소 출입

6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정금법 제42조)

가. 회계보고 공고 : 2020. 5. 22.(금) 일괄공고(예정)

나. 열람 및 사본교부 기간

-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월간
- (2) 열람대상 :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 (3) 사본교부기간 : 기간제한 없음.
- (4) 사본교부대상 : 열람대상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 통장사본 제외

다.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권자 : 누구든지

II

선거비용의 보전·반환 등

Ⅱ. 선거비용의 보전·반환 등

1 선거비용의 보전(법 제122조의2)

가. 보전대상 비용

후보자가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 정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함.

나. 보전금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전하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 내에서 보전

다. 보전요건

-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라. 보전하지 아니하는 비용

-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2) 정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내용
- (3)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 (4)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5)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 (7)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 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 (8) 청구금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 (9)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
- (1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법에 따른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12)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13)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
- (14) 정금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 (15) 그 밖에 위 (1)~(13)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마. 보전청구

- (1) 청구권자 : 후보자
- (2) 청구기한 : 2020. 4. 27.(월)까지
- (3) 청구처
 - (가) 선거사무소 : 관할선거구위원회
 - (나) 선거연락소 : 관할구·시·군위원회
- (4) 청구방법 : 서면에 의함(**붙임 40** 서식).

2 위법비용 등 보전제한(법 제135조의2)

가. 전액 미보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나. 해당금액의 2배 미보전

- (1) 사유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법 또는 정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
- (2) 보전제한금액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 해당금액의 5배 미보전

(1) 사 유

정당, (예비)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법 제261조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보전제한금액 :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

라. 해당금액의 2배 보전유예

(1) 사 유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법 또는 정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기소되거나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

(2) 유예기간 :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 유예금액 :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유예된 보전비용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정산 처리됨.

마. 보전이후 반환명령

(1) 사 유 : [가~다]의 미보전 사유가 보전 이후 발견된 때

(2) 반환기한 :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징수위탁 : 기한 안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3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규칙 제51조의3)

가. 반환대상자

선거비용 보전 이후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등 미보전 사유가 발견된 때 해당 후보자

나. 반환대상금액 : 보전비용 중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금액

다. 반환기한 :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라. 징수위탁 :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4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법 제265조의2)

가. 반환대상자

- (1) 해당 선거에 있어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았으나 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 포함)
-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나. 반환대상금액

당해 선거에 있어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금액 전액

다. 반환기한 :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라. 징수위탁

반환기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

5 반환기탁금·보전비용의 인계(정금법 제58조)

가. 인계대상자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반환·보전 받은 후보자

나. 인계대상비용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보전비용에서 후보자의 자산 또는 차입금으로 지출한 기탁금 또는 정치자금(선거비용+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공제한 금액

※ 당선인은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을 인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인계하여야 할 기탁금 또는 보전비용의 산출방법은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참조

다. 인 계 처

(1) 정당추천후보자 : 소속 정당

(2) 무소속후보자 :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

라. 인계시기 및 인계·인수서 제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계하고, 보전받은 날부터 30일까지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붙임 41] (정금규칙 별지 제50호서식)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계대상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할 필요 없음.

※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금법 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3항제5호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4항에 의하여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제4호에 의하여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부록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 제출사항 목록	125
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126
3	각종 신청·신고 제출 서식 목록	156
4	선거여론조사 안내	218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228
6	선거사무관계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232
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표	234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 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주 체 및 대 상
2020. 1. 1.(수)부터 2020. 4. 1.(수)까지	정강·정책 방송연설 ※ 연설신고 : 방송일전 3일까지신고	중앙당 → 중앙위원회
2020. 1. 16.(목)부터 2020. 3. 15.(일)까지	당원집회 신고	정당 → 관할구·시·군위원회
2020. 1. 16.(목)부터 2020. 4. 1.(수)까지	정강·정책 신문광고 게재 ※ 인증서 교부신청 : 광고전까지	중앙당 → 중앙위원회
2020. 3. 21.(토)부터 2020. 3. 27.(금)까지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	무소속후보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2020. 3. 26.(목)부터 2020. 3. 27.(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2020. 3. 27.(금)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후보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후 ~ 4. 14.(화)까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변경 신고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선임·해임·교체 신고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공개장소 연설·대담 자동차등 표지 교부	후보자
	후보자 방송연설 신고 <방송일전 3일까지>	후보자
2020. 4. 2.(목)부터 2020. 4. 15(수)까지	정강·정책홍보물 제출 정당기관지 제출	중앙당 → 중앙위원회
2020. 4. 1.(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2020. 4. 3.(금)까지	책자형·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2020. 4. 8.(수)까지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 연락소장 → 읍·면·동위원회
2020. 4. 13.(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 연락소장 → 읍·면·동위원회
2020. 4. 13.(월)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 소장 → 관할구·시·군위원회
2020. 4. 15.(수)	투표·개표	
2020. 4. 27.(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후보자
2020. 5. 15.(금)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회계책임자
2020. 6. 12.(금)이내	선거비용보전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

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후보자등록신청서

(1) 작성예시

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선거구)
2. 소속정당명 : ○○당
3. 성 명 : 홍길동 (한자 : 洪吉童)
4. 주민등록번호 : 5*0510 -1*3036*
5.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시 ○○구 ○○호 □□길 △△
[(02)123-4567. 010-1234-5678]
6. 직 업 : ○○회사 대표
7. 학 력 : ○○대학교 ○○학과 졸업
8. 경 력 : (전)제○대 ○○구의원
(현)○○구 체육회 회장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신청인 후보자 홍길동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 (1)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1통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매
-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 (3)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 (4)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1통
- (5)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1통
- (6)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1통
- (7)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
- (8)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
- (9)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1통
- (10) 인영신고서 1통
- (11) 사진 2매

(2) 작성요령

기재항목	기 재 요 령
"1. 선 거 명"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선거구)"라 기재함.
"2. 소속정당명"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으로 기재함.
"3. 성 명"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과 한자 병기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 라" 등으로 기재를 원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정허가(결정통보)를 받아 구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하여야 함. ※ 다만, 관행적으로 성(姓)을 사용해온 경우라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외한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홍보물 등에는 "이(리)○○, 유(류)○○, 나(라)○○" 또는 "이○○(리○○), 유○○(류○○), 나○○(라○○)"등과 같이 병기할 수 있음.
"4. 주민등록번호"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5. 주 소"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후보자 본인의 도로명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함.
"6. 직 업"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본인이 후보자등록신청 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을 기재함. (예시) ○○회사 대표 등
"7. 학 력"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사실대로 명확히 기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명"은 졸업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하며,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외국학력의 경우에는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고 한글번역문도 함께 제출함. ※ 정규학력이 있는 사람은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 불가함. 다만, 학력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 "학력증명서의 제출은 선거벽보,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및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경우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함)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를 거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선거벽보 등에 ○○대학교 졸업이하 학력만 게재하고자 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의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8. 경 력"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으로 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 시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직업 또는 경력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작성함.
"신 청 인"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1) 작성예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등록의 무자 후보 자	①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②선거구명	○○선거구
	③소속정당명	○○당	④성명	홍길동
⑤신고사항 (해당항목에 "✓"자 표시)				
재 산 신 고 사 항				기타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금·수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채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채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석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원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출자지분 <input type="checkbox"/> 재산신고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영리 법인에 출연재산
<p>본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3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후보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p>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주 : 무소속후보자는 “③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후보자재산 신고사항					
①소 속 정당명	○○당	②선거명및 선거구명	제21대국회의원선거 (○○선거구)	③성 명	홍길동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와의 관계	⑥재산의 종류	⑦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 액 (천원)	⑨비 고
토 지	본인	인 야	경기도○○시 ○○동 산 ○○번지 (7,000㎡)	5,000	
		인 야	경기도○○시 ○○동 산 ○○번지 (6,000㎡중 상속지분 3,000㎡)	7,000	사실상 소유 (등기명의인 ○○○은 양부, 상속지분 1/2)
		전	경기도○○시 ○○동 ○○번지 (5,000㎡)	5,000	
		대 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500㎡중 공유지분 500㎡)	39,600	공유 (지분1/3)
	배우자	장종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650㎡)	4,950	
	부	전	○○광역시 ○○구 ○○동 ○○번지 (2,100㎡)	4,000	
		묘 지	○○도 □□시 ○○동 ○○번지 (245㎡)	5,000	일반묘지
	모	당	○○광역시 ○○구 ○○동 ○○번지 (2,600㎡)	3,250	
	장 남	장종지	○○광역시 ○○구 ○○동 ○○번지 (3,500㎡)	8,200	
	삼 남	전	○○도 ○○시 ○○면 ○○리 ○○번지 (1,200㎡)	5,000	
소 계				87,000	
건 물	본인	주 택	서울 ○○구 ○○호 ○○ (건물 90㎡/대지 300㎡)	150,000	
	배우자	전세권	서울 ○○구 ○○호 ○○ (건물 60㎡/대지 10㎡-사무실)	20,000	전세보증금
	부	아파트	○○ 북구 ○○호 ○○ ○○아파트 (건물 94.76㎡)	150,000	등기면적
	모	빌딩	○○ 중구 ○○호 ○○ ◇◇빌딩 (건물165㎡중80/대지660㎡중 330)	500,000	공유(지분1/2)
	장 남	아파트	○○ ○○구 ○○호 ○○ ○○아파트 (건물 94.76㎡)	60,000 (불입금액)	분양가액 120,000
		아파트	서울 ○○구 ○○동 ○○번지 ○○아파트 (건물 84.99㎡)	70,000 (불입금액)	분양가액 100,000
	장 녀	임차권	○○ 남구 ○○호 ○○ ○○빌라 (건물 60㎡)	45,000	임차보증금
	차 녀	오피스텔	서울 ○○구 ○○호 ○○ △△빌딩 (건물 4.07㎡/대지 9㎡ - 13평형)	33,929	사실상소유(등기명의인○○○는 차녀의 위삼촌)
소 계				1,028,929	

④ 재산의 구분	⑤ 후보자와의 관계	⑥ 재산의 종류	⑦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 가액 (천원)	⑨ 비고
부 동 산 준 용 권 리	본 인	광업권	청량석(강원 00군00면 00리 00번지) 존속기간(2000. 1. 1 ~ 2020. 12. 31)	50,000	
		자동차	2005년식, 아반떼 30, 1498cc, 서울1가1234 (취득가액 : 10,000천원)	1,500	
	배우자	어업권	제1종양식어업(강원 삼척시 00면00리 00번지) 존속기간(2011. 1. 1~2020. 12. 31)	30,000	공유(지분율)
		중 기	북도우저, 삼성216377, 98년, 경기01가1234	23,000	
	부	선 박	강선, 어선, 동해호, 70톤, 90년복80-3735	250,000	
		항공기	희전익, B01056B8, 보잉사, 95년	300,000	
		항공기	비행기, JU206E, 세스나스, 88년	300,000	
	장 남	선 박	목선, 어선, 동남호, 30톤, 95년P9851234	300,000	
소 계			1,254,500		
현 금	본 인	현 금		12,750	
	배우자	현 금		10,000	
	장 녀	현 금		11,000	
소 계			33,750		
예 금	본 인	예 금	00은행 5,000 △△은행 5,000	10,000	
	배우자	예 금	00은행 2,000 △△은행 1,000 □□은행 7,000	10,000	
	장 남	적 금	00은행	6,000 (불입금액)	2020. 12. 31말기 계약금액 (20,000)
		예탁(수)금	00증권	5,000	
	장 녀	신 탁	00투자신탁	10,000	2021. 12. 31말기
	삼 남	보 험	00보험	12,000 (불입금액)	2020. 12. 31말기 계약금액 (20,000)
소 계			53,000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본 인	예 금	00은행	5,000	
소 계				5,000	

④ 재산의 구분	⑤ 후보자와의 관계	⑥ 재산의 종류	⑦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 가액 (천원)	⑨ 비고
증 권	본 인	주 식	(상장) ○○은행 3,000주, ○○증권 100주 (비상장) ○○전자 1,000주	40,000 5,000	최종가액 (2019.12.31)
		국 채	(국민주택채권2종) 기획재정부	5,000	
		공 채	(도로공사채) 한국도로공사	5,000	
		금융채	(산업금융채) 산업은행	5,000	최종가액 (2019.12.31)
		주식매수 선택권	○○전자 5,000주(390,000), ○○제지 10,000주(400,000)		
소 계			60,000		
채 권	본 인		사인간의 채권	10,000	2020.12.31.말기
소 계				10,000	
채 무	본 인		사인간의 채무	△ 20,000	
			전세보증금	△ 30,000	2022.6.30.말기
	배우자		○○은행 대출금	△ 10,000	2020.6.15.말기
소 계				△ 60,000	
금 및 백금	본 인	금	24K (300g) (취득가액 : 4,000천원)	6,000	
	배우자	금	24K (500g) (취득가액 : 8,000천원)	9,380	
소 계				15,380	
보 석 류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 지	2캐럿(무색) (취득가액 : 10,000천원)	12,000	
		진주목걸이	5mm (20개-백색)	7,500	
소 계				19,500	
골 동 품 및 예 술 품	본 인	동양화	성춘(69.5x182, 청전 이상변, 1964년작) 1점	20,000	
	부	동양화	매조도(24x21, 단원 김홍도, 조선말기작) 1점	150,000	
	모	도자기	백자(25x12.5x11.5, 작자미상, 조선초기작) 1점	68,000	
소 계				238,000	
회 원 권	본 인	골 프	○○컨트리클럽(경기 용인)	25,000	
	배우자	콘 도	○○콘도미니엄(20평형, 강원 홍천)	5,000	
	장 남	헬 스	○○헬스클럽	18,000	
소 계				48,000	

④ 재산의 구분	⑤ 후보자와의 관계	⑥ 재산의 종류	⑦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 가액 (천원)	⑨ 비고
지식재산권	본인	특허권	관이읍부위의 포장방법 061758호 (2005. 3. 23~2025. 3. 23.)		
	부	실용신안권	컴퓨터전용테이블의 설치판 조립장치 071961호 (2010. 7. 1. ~ 2020. 7. 1.)		
		디자인권	등록번호139961호(2012. 11. 12 ~ 2022. 11. 12)		
		상표권	등록번호261655호(2012. 11. 12 ~ 2022. 11. 22.)		
		저작권	자한상(미술저작물) 등록번호931234호 (1999. 2. 5 ~)		
소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부	합자회사	○○합자회사, 연감대출액 : 1,000,000 출자지분 : 20%, 출자금액 : 50,000	50,000	2000년도 출자 (1945년 부친성립 유증받음)
소계				50,000	
비영리법인에 출연 재산	본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학원(서울 ○○구 소재) 대표자성명, 보유직위, 목적사업 (출연재산 : ○○백만원)		2008년 출연
	배우자	사단법인	○○사회복지사업재단(○○시 ○○구 소재) 대표자성명, 보유직위, 목적사업 (출연재산 : ○○백만원)		2000년 출연
소계					
	차남				고지거부 (회사원으로 독립생계유지)
합계	본인			376,850	
	배우자			101,830	
	부			1,209,000	
	모			571,250	
	장남			467,200	
	장녀			66,000	
	차녀			33,929	
	삼남			17,000	
	삼녀		재산신고사항 없음.		
	총계				2,843,059

(2) 작성요령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1. 신고자 : 공직선거후보자
2. 신고시기 : 후보자등록시(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신고서접수기관 : 관할선거관리위원회
4. 재산신고(산정)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5. 신고대상재산의 범위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 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재산
 - 소유명의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6. 신고대상재산의 내용
 - 가. 부동산
 -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유권·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및 분양권 등
 -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
 - 나. 동산 등
 - 각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 현금(수표포함), 예금,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 주식매수 선택권 등), 채권, 채무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금·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7.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소명내용 기재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나. 기재순서
 - 후보자재산신고사항서식중 "④재산의 구분"란에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현금⇒예금⇒「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증권⇒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골동품·예술품⇒회원권 ⇒지식재산권⇒합명·합자·유한회사출자지분⇒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순으로 기재한다.

- 신고재산(재산의구분)별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순서로 작성하며 직계존속중에서는 부·모, 직계비속에서는 나이순으로 기재함.

다. 기재내용의 수정

기재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두줄로 굵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됨.

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계란 앞의 "후보자와의 관계"란에 그 관계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고지거부"라 기재하며 ()안에 그 사유를 병기함.

마.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에 "재산신고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각 항목 별 기재 요령

1. 토 지

가. 신고대상

-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매 도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잔금이 완불되었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
└ 으면 신고대상이 되고,

┌ 매 입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됨.
└ (계약금만 수수한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

※ 대지상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건물" 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m²)을 기재함.

라. "가액"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m²)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에는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인 경우에는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함.

- 다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일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토지를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 "충분양가액"을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일 경우 ⇒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계약관계"와 "수수한 총금액"을 기재함.

2. 건 물

가. 신고대상 : "1. 토지"의 경우와 같음

- ※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상가 등 소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종류"란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사무실", "전세(임차)권"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소재지(세부 주소 포함)와 면적(대지 및 건물면적) 등을 기재함.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m² (1평은 3.3m²)로 환산하여 기재함.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의 동·호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라. "가액"란

- 주택은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 ※ 분양권의 경우에는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충분양가액을 기재함.
-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을 기재함.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m²)"으로 산정함.
 -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함.
- 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매입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함.
- 건물을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 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 "충분양가액"을 기재함(예시 : 분양가액 00천원).
- 공동소유건물일 경우 ⇒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건물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무허가건물일 경우 ⇒ "무허가건물"이라고 표시함.

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가. "재산의 종류"란 :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으로 기재함.

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① 광업권·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
- ② 자동차 : 차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등
- ③ 건설기계 : 기종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
- ④ 선박 : 종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건조연도, 선박등록번호 등
- ⑤ 항공기 : 기종, 형식, 제작자, 제작연도 등을 기재함.
 -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〇〇천원).

다. "가액"란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할 수 있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고,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다만, 자동차의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최근의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기재하며,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가표준액(과표)을 기재하고, 기준가액 등 평가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차량의 실매입액을 기재할 수 있음.

라. "비고"란

- 권리를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공유", "합유"라고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함.
- 가액산정방법(예 :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매입액)을 기재함.

4. 현 금(수표포함)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현금(수표포함)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현금"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공란으로 둠.

라. "가액"란 : 소유자별 현금(수표포함)보유총액을 기재함.

5. 예 금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5. 예금"항목과 "6. 정치자금"항목의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항목과 "6"항목을 구분해서 각각 신고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 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신고함.

나. "재산의종류"란 : "예금", "적금", "신탁", "보험", "예탁금"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예탁기관별로 기관명을 기재함("지점명" 미기재).

라. "가액"란 : 예탁기관별 예금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적립식예금의 경우 "만기일"과 "만기계약금액"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회비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예금이 문중회비일 경우 ⇒ "문중회비"라고 표시함)

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가. 신고대상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각 소유자별로 "5. 예금"항목과 "6. 정치자금"항목의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항목과 "6"항목을 구분해서 각각 신고

나. "재산의종류"란 : "예금"으로 기재함.

7. 증 권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권을 신고함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함).

나. "재산의종류"란 : "주식", "국채", "공채", "금융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등으로 기재함.

-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기재함.
-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임.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증권 명칭과 수량을 기재함.
- 주식매수선택권은 교부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교부받을 주식의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현재시가로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하여 ()안에 기재함.

라. "가액"란 :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단, 주식매수선택권은 공란으로 둠

-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최종가격(재산신고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함.

8. 채 권

가. 신고대상 : 각 채권자별로 채권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권을 신고함.

- ※ 주택 기타 부동산의 전세(임차)권 등은 본 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1. 토지" 또는 "2. 건물" 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둠.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권" 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 채권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권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9. 채 무

가. 신고대상 : 각 채무자별로 채무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신고함.

※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본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둠.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무", "○○은행 대출금",
"전세 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채무별 가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무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한 경우 ⇒ "전세(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

10. 금 및 백금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석류에 부착된 금·백금은 본항목에는 기재하지 않고 "10. 보석류"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금"·"백금"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함량(○○K)", "중량(g)"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함.

11. 보 석 류

가. 신고대상 : 보석류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등 보석의 종류 또는 제품의 종류를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크기", "색상"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12. 골동품 및 예술품

가. 신고대상 :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도자기", "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등)", "서예", "공예", "조각", "수예", "칠기"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작품명" 및 "작품의 특기사항(크기·작자·제작 연도)" 등을 기재함.

※ 크기는 가로×세로×높이를 cm로 표시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13. 회원권

가. 신고대상 :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회원권명, 회원권이 소재하고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소재지) 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취득가액"을 기재함.

다만,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14. 지식재산권

가. 신고대상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나. "재산의 종류"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기재함.

※ 저작권(지적소유권) :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음.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연간소득금액"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둠.

마. "비교"란 : 소득원인행위 등을 기재

15.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 가. 신고대상회사 : 주식이 발행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위 3개회사는 출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소규모의 개인회사적 특색을 갖고 있음.
- 나. "재산의 종류"란 : "합명", "합자", "유한" 등으로 기재함.
- 다. "소재지 · 면적 등 권리명세"란 : 전년도 말의 그 회사의 "회사명"과 "결산서상 연간매출액"을 간략하게 기재함.
- 라. "가액"란 : 회사정관으로 정하여진 출자재산(노력출자를 포함)과 자본에 대한 출자자의 지분비율을 기재함.
- 마. "비고"란 : "출자연도"를 기재함.

16.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 "신고대상 비영리법인"이란 : 학술 · 종교 · 자산 · 기예 ·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함.
- 나. "재산의 종류"란 :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기재함.
- 다. "소재지 · 면적 등 권리명세"란 : "법인명 · 보유직위 · 출연재산" 등을 기재함.
-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둠.
- 마. "비고"란 : "출연연도" 등을 기재함.

☐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1) 작성예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후 보 자	①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②선거구명	○○선거구
	③소속정당명	○○당	④성 명	홍길동
<p>⑤첨부서류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별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병적증명서 2부(본인 및 장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무확인서 1부(차남)</p>				
<p>본인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병역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3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 후보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p>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주 : 1. 무소속후보자는 “③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2.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별지)”은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 지>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① 소속 정당명	○○당	② 선거명 및 선거구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③ 성명	홍길동
④ 본인과의 관계	⑤ 성명	⑥ 생년월일	⑦ 병역사항	⑧ 비고	
본인	홍길동	195X. 5. 10.	○군별 : 육군 ○복무부대 : 25사단 ○계급 : 병장 ○병과(군사특기) : 1111(소총수) ○입영일자 : 1976. 12. 14. ○전역일자 : 1979. 6. 15. ○전역사유 : 만기		
(장남)	홍진현	198X. X. 23.	○2003. 6. 12. 2급 현역병입영대상 ○2004~2009 입영연기(유학) ○2010. 9. 15. 소집후 귀가 ○2010. 11. 12. 5급 전시군호역(사시)	질병명등의 비공개요구	
(차남)	홍진선	199X. 11. XX.	○군별 : 육군 ○복무부대(기관) : 00부대 정비대대 ○계급 : 일병 ○병과(군사특기) : 1111(소총수) ○입영일자 : 2019. 10. 21.		
	“이	하	빈 칸		

(2) 『병역사항신고서』 항목별 작성요령

- 1) “소속정당명”란은 후보자의 추천정당명을,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기재함.
- 2) “본인과의 관계”란은 본인과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을 구분하되,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함.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미만의 남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 (1) 본인, 아들, 손자, 외손자로 구분
 - (2) 본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여자”로 기재
 - (3) 아들의 경우에는 “장남”, “차남”, “3남” 등으로 기재
 - (4) 손자 또는 외손자의 경우에는 “손자” 또는 “외손자”로 기재
- 3) “병역사항”란은 첩부한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복무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 ‘군번’은 기재하지 아니함.
 - (1) 대상자별 신고대상 병역사항

구 분	신 고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인 신고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자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인 경우), 입영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종인자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인 경우),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자(편입된 것으로 보는 자) ▪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자 ▪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병역판정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

- (2) 여성후보자의 경우 “병역사항”란에 “병역의무 없음”으로 기재

※ 다만, 여성후보자로서 병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병역사항을 사실대로 기재

- 4) “병역사항”에 관한 구체적 작성예시는 다음 면 참조

- 5) “비고”란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이나 직계비속의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 내용 및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질병명 등의 비공개요구”를 기재함.

“⑦ 병역사항”란 작성예시

※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함.

구 분		병역사항 기재(예)	기재요령
복무를 마친 사람	만기 제대자 (소집 해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별 : 해군 ○복무부대(기관) : 제1함대사령부 ○계급 : 병장 ○병과(군사특기) : 15(전담병) ○입영일자 : 2002.3.11. ○전역일자 : 2004.6.19. ○전역사유 :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별 : 육·해·공군으로 구분 ○입영일자 : 사병은 입영일자, 장교는 임관일자
	복무 이탈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별 : 육군 ○복무부대(기관) : 00사단 ○계급 : 이병 ○병과(군사특기) : 1111(소총수) ○입영일자 : 1971.3.5. ○전역일자 : 1977.5.1. ○전역사유 : 탈영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역일자 -현역·상근예비역·의무경찰 등은 전역일자 -사회복무·산업기능(전문연구) 요원등은 소집해제 일자
복무중인 사람	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별 : 육군 ○복무부대(기관) : 00부대 정비대대 ○계급 : 일병 ○병과(군사특기) : 1111(소총수) ○입영일자 : 2019.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과(군사특기) : 주특기부호 또는 주특기명
	사회 복무 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대(기관) : 경기 과천시청 ○계급 : 일병 ○소집일자 : 2019.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기재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면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3.6.12. 2급 현역병입영대상 ○1994~1999 입영연기(유학) ○2000.9.15. 소집후 귀가 ○2000.11.12. 5급 전시근로역(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전시근로역 등으로 기재
	기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0.7.22. 입영기피이후 병적기록이 없음. ○1989년 병역의무종료 	
복무대기중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처분일자 : 2019.11.28. ○신체등급 : 1급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처분사유 :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아, 사생아, 국외이주, 장기대기, 독자 등 ※ 질병이라고 기재시 괄호안은 질병명 기재
병역판정검사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병역준비역 ○2020년 병역판정검사대상 	
병적기록 없는 사람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법제정(49.8.6.)이전으로 병적부작성안됨 ○0000년 병역의무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적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 ○0000년 병역의무종료 	

㉔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1) 작성예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선 거 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 거 구 명	○○선거구
소속정당명	○○당	후보자성명	홍길동
납 세 신 고 사 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산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종합부동산세			
<p>첨부서류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별지)</p> <p>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사항을 위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3월 일 위 후보자 홍길동 (인)</p>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 별 지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소속 정당명		○○당		선거명 (선거구명)		제21대국회의원선거 (○○선거구)			성명		홍길동		
<단위 : 천원>													
연도	후보자와의 관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		
		납부 세액	해당연도체납액 (완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해당연도체납액 (완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해당연도체납액 (완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체납액	현 체납액
2015 년도	부	신고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본인	1,500	-	-	380	200 (2018.2.5)	-	200	-	-	2,080	200 (2018.2.5)	-
	배우자	-	해	-	당	-	없	음	-	-	-	-	-
	장남	200	-	-	20	-	-	150	-	-	370	-	-
	차남	-	해	-	당	-	없	음	-	-	-	-	-
	손자/	-	해	-	당	-	없	음	-	-	-	-	-
소 계	1,700	-	-	400	200 (2018.2.5)	-	350	-	-	2,450	200 (2018.2.5)	-	
2016 년도	부	신고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100	-	-	-	-	-	-	-	-	100	-	-
	장남	200	-	-	20	-	-	150	-	-	370	-	-
	차남	-	해	-	당	-	없	음	-	-	-	-	-
	손자/	-	해	-	당	-	없	음	-	-	-	-	-
소 계	1,800	-	-	400	-	-	350	-	-	2,550	-	-	
2017 년도	부	신고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500	150 (2019.2.5)	-	-	-	-	-	-	-	500	150 (2019.2.5)	-
	장남	200	-	-	20	-	-	150	-	-	370	-	-
	차남	100	-	-	50	-	-	200	-	-	350	-	-
	손자/	50	-	-	10	-	-	-	-	-	60	-	-
소 계	2,350	150 (2019.2.5)	-	460	-	-	550	-	-	3,360	150 (2019.2.5)	-	
2018 년도	부	신고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500	-	-	100	-	-	150	200	200	750	200	200
	장남	200	-	-	20	-	-	-	150 (2019.4.30)	-	220	150 (2019.4.30)	-
	차남	300	-	-	10	-	-	500	-	-	810	-	-
	손자/	400	-	-	200	-	-	-	-	-	600	-	-
소 계	2,900	-	-	710	-	-	850	350	200	4,460	350	200	
2019 년도	부	신고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본인	1,500	-	-	380	-	-	1,000	-	-	2,880	-	-
	배우자	-	해	-	당	-	없	음	-	-	-	-	-
	장남	200	-	-	20	-	-	-	-	-	220	-	-
	차남	-	해	-	당	-	없	음	-	-	-	-	-
	손자/	-	해	-	당	-	없	음	-	-	-	-	-
소 계	1,700	-	-	400	-	-	1,000	-	-	3,100	-	-	
합 계	부	신고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본인	7,500	-	-	1,900	200 (2018.2.5)	-	1,800	-	-	11,200	200 (2018.2.5)	-
	배우자	1,100	150 (2019.2.5)	-	100	-	-	150	200	200	1,350	350	200
	장남	1,000	-	-	100	-	-	450	150 (2019.4.30)	-	1,550	150 (2019.4.30)	-
	차남	400	-	-	60	-	-	700	-	-	1,160	-	-
	손자/	450	-	-	210	-	-	-	-	-	660	-	-
합 계	10,450	150 (2019.2.5)	-	2,370	200 (2018.2.5)	-	3,100	350	200	15,920	700	200	

(2) 작성요령

(가) “후보자와의 관계”란

- “본인”, “배우자”, “부” 또는 “모”, 직계비속은 출생순으로 “장남·장녀·차남”, “손자1·손녀1·손녀2” 등으로 기재하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함.
 ※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기재함.

(나) “세금 납부·체납액”란

- 납부 및 체납세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금액을 기재하되, 금액은 백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기재
- 납부세액과 체납세액이 전혀 없는 때에는 “해당없음”이라 기재

구 분	납부기간	납부세액	체납세액
소 득 세	과세기간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14 ~ 2018년 사이 발생한 소득세 ☆ 2014년도 분은 2015년도 란에 ☆ 2015년도 분은 2016년도 란에 ☆ 2016년도 분은 2017년도 란에 ☆ 2017년도 분은 2018년도 란에 ☆ 2018년도 분은 2019년도 란에	
재 산 세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2015 ~ 2019년 부과분 ☆ 당해연도 부과분은 당해연도 란에	당해연도에 그대로 기재
종 합 부동산세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의 경우(500만원 초과시)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2015 ~ 2019년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 당해연도 발생분은 당해연도 란에	

- 해당연도 과세분중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에 완납한 일자를 기재
 ※ 건당 10만원이하 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
-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납부세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직계비속은 신고를 거부할 수 없음)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본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기재

(3)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에 따라 신고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시 5년간의 납부세액과 체납세액을 연도별로 각각 구분하고, 체납액의 완납일자과 발급당시 현재의 체납액을 기재되도록 요청
-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시 후보자등 신고대상자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발급신청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지방자치단체) 발급 시 하나의 구·시·군청에 과세물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물건지”란에 이를 모두 기재하고, “납부·체납세액”란에는 이들 과세물건에 대한 납부 및 체납세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무방

☐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작성예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선 거 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 거 구 명	○○선거구	
소속정당명	○○당	후보자성명	홍길동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당선 또는 낙선 여부
1995년	□구의원선거	□□구○선거구	□□□당	당선
2010년	□□구의원선거	□□구○선거구	□□□당	당선
2014년	○○시장선거		무소속	사퇴
<p>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3 월 일 위 후보자 홍길동 인</p>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 주 : 1.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부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교육의원선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한 경력을 기재함.
2. “소속정당명”란은 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하여 후보자 등록당시 추천정당명을 기재하며, 무소속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기재함.
3.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당선 또는 낙선 여부”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라고 기재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서식

(1) 작성예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21대국회의원선거 ○○선거구

1. 인적사항

기 호	소 속 정당명	후보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 업	학 력	경 력
○	○○당	홍길동	남	195×. 5.10 (○○세)	○○회사 대표	○○대학교 ○○학과 졸업	(현)○○체육회회장 (전)○○대표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843,059	376,850	101,830	1,780,250	584,129	육군 병장 (만기전역)	-장남 : 5급 전시근로역 -차남 : 육군일병(복무중)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 보 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5,920	700	200	-공무집행방해죄 징역1년6월 (1995.6.20)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00만원 (2012.10.1)
후 보 자	11,200	200	없음	
배 우 자	1,350	350	200	
직계존속	신고거부			
직계비속	3,370	150	없음	

4. 소명서

전과기록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제도 쟁취를 위한 시위과정에서 경찰관과의 몸싸움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임.

(2) 작성요령

(가) “소속정당명 및 후보자 성명”란

소속정당명 및 후보자 성명은 후보자등록신청서류에 기재된 대로 한글로 기재하되,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으로 기재함.

(나) “생년월일”란 : 나이는 선거일 현재의 만 나이를 기재함.

(다) “직업”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직업을 그대로 기재함.

(타) “학력”란

-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의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는 학력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음.

(마) “경력”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을 그대로 기재함.

(바) “재산상황”란

- 후보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별로 각 신고대상재산의 가액을 총액으로 기재함.
-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고지거부”라고 기재함.
 -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중 고지거부한 자와 고지거부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재함.
 - 예) “부 : 고지거부” , “모 : 54,000” (모의 재산액이 54,000,000원인 경우)
- 신고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없음”이라 기재함.

(사) “병역사항”란

-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기재함.
-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처분사항”을 기재함.
-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는 전역(소집 해제)당시의 “군별, 계급, 전역·소집해제 사유”를 기재함.

- 현역, 보충역, 전환복무 등 복무중인 신고대상자는 군별 및 계급과 “복무중”이라 기재함.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자(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적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는 병역처분내용을 기재함.
- (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란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월 이후에 발급받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에 따라 기재하되,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세금납부 또는 체납에 관한 신고사항을 거부한 경우에는 납세액란 또는 체납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함.
 - ※ 직계존속중에서 신고를 거부한 자와 이를 거부하지 않은 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재함.
 - 예) 부 : “신고거부”, 모 : “1,000” (모의 납세액이 1,000,000원인 경우)
- (자) “전과기록”란
- 후보자 본인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죄명(실효된 형 포함)과 형량 및 그 처분 일자를 기재함.
- (차) “소명서”란
-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에 대해 소명할 수 있으며,
 - 소명서는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함.
- (카) 기타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의 둘째면에 게재하되, 그 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셋째면에 연이어 작성할 수 있음.
 - ※ 선거공보의 둘째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소명자료외의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기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참고]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발급기관 등

제출서류		발급기관·방법
병역사항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기관 : 전국 지방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증명서는 반드시 “공직자 등 신고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FAX 민원신청으로 발급 가능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제3자(위임장 필요)의 방문 ♣처리기한 : 당일 발급 가능
	복무확인서 (복무증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자: 해당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기관 : 전국 세무서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제3자(위임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감, 인감증명서 필요)의 방문 ♣처리기한 : 2일 이내
재산세 납부· 체납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기관 : 주소지·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 관할 구·시·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구·시·군에서는 FAX민원신청으로 발급 가능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제3자(위임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감, 인감증명서 필요)의 방문 ♣처리기한 : 당일 발급 가능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기관 : 전국 경찰관서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보서는 반드시 “공직선거 후보자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신청방법 : 본인 방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 ♣처리기한 : 2일 정도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학력 : 출신학교, 교육청, 공인된 증명서 발급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FAX 민원신청으로 발급 가능) - 외국학력 : 출신학교 또는 해당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발급기관 ♣최종학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원본 포함), 수료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 원본 포함), 그 밖에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3 각종 신청·신고 제출 서식 목록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
3.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서
4.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5.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6.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별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 6-1.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 신청서
<별지>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6-2. 재산세 납부·체납증명 신청서
<별지>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7-1.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8.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9.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10.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
11. 후보자 사퇴신고서
12.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교부 신청서
13.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14. 개표참관인 신고서
15.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16.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공동설치)·(변경) 신고서
17.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별지> 정당선거사무소 인영 등
18. 회계책임자 (선임)·(겸임)·(변경) 신고서
<별지>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18-1.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 18-2.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18-3.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19.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 신고서
- 20. 인영신고서
- 21.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 22.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 23.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삭제 요청서
- 24.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 25. (선거벽보)·(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이의제기서
- 26. (후보자)·(정당)의 방송연설 신고서
- 27.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용·라디오용) 제출서
<별지> 경력방송용 사진파일 규격
- 28. 표지교부 신청서
- 28-1. 현수막 등 표지 재교부 신청서
- 29. 대담·토론회 참석승낙서
- 30.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신고서
- 31.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 32. 대담·토론회 불참사유서
- 33.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서
- 34.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서
- 35. 이의 신청서
- 36. 반론보도 청구서
- 37. 신문광고계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 38.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 제출서
- 39.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 40.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 41.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붙임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나)]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성 명 (한자 :)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6. 직 업
7. 학 력
8. 경 력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청인 후보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덧붙임 서류 : (1)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통(1매)
 (2) 가족관계증명서 통
 (3)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통
 (4)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통
 (5)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통
 (6)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통
 (7)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통
 (8)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통
 (9)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통
 (10) 인영신고서 통
 (11) 사진 매

- 주: 1.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되,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타)]

후 보 자 추 천 서

1. 선거명(선거구명) :
2. 추천받는 자
 - 가. 성 명
 - 나. 주민등록번호
 - 다. 주 소
3. 추천절차

위의 사람을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당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0년 월 일

추천인 [○ ○ 당 인]
 대표자 ○○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추천절차”란은 「공직선거법」 제47조와 관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후 보 자 재 산 신 고 사 항					
①소 속 정당명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		③성 명	
④재산의 구 분	⑤후보자와의 관 계	⑥재산의 종 류	⑦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⑧가 액 (천 원)	⑨비 고
합 계					

※ 무소속후보자는 "①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고 기재함.

< 별 지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①소속정당명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	③성 명	
④본인과의 관계	⑤성 명	⑥생년월일	⑦병역사항	⑧비고
본 인				
(직계비속)				
(직계비속)				
(직계비속)				

< 별 지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소속정당명		선거명 (선거구명)						성 명					
(단위 : 천원)													
연도	후보자와의 관계	소 득 세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계		
		납부 세액	해당연도 체납액 (완납일자)	현재 납액	납부 세액	해당연도 체납액 (완납일자)	현재 납액	납부 세액	해당연도 체납액 (완납일자)	현재 납액	납부 세액	체납액	현재 납액
2015 년도													
	소계												
2016 년도													
	소계												
2017 년도													
	소계												
2018 년도													
	소계												
2019 년도													
	소계												
합계													
	합계												

- 주: 1. "후보자와의 관계"란에는 "본인", "배우자", "부 또는 모", "장남·차남·3남", "장녀·차녀·3녀" 등으로 기재하되,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합니다.
2.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납부세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합니다.
3.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소득세등"이라 함)는 천원단위(백원단위 절사)까지만 기재합니다.
4. 소득세등의 납부·체납증명서 제출대상자 중 납부·체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합니다.
5. 해당연도 과세분 중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안에 그 완납일자를 기재합니다.
6. 건당 10만원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합니다.

붙임 6-1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2일
후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증명발급대상 직계 존비속	명단 별지 * 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은 별지로 첨부하여 후보자(위임의 경우 위임자의 인감도장)의 서명 또는 도장을 간인 날인				
증명발급대상기간	최근 5년간				
원천징수 소득세 발급 미희망 세목 ^{주1}					
제출처	선거관리위원회	용도	공직선거후보자용		
위 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위임하는 경우) 위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 (성명) (인감도장)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세는 제외)중 발급을 원하지 않는 세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원천징수 세액은 제외합니다 2.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위임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위 위임장과 함께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하여 드립니다. (후보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3. 다른 사람의 인감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 명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사명 또는 날인)	본 인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checkbox"/>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checkbox"/>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2	(사명 또는 날인)	배우자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checkbox"/>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checkbox"/>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3	(사명 또는 날인)	직계존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존속]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checkbox"/>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checkbox"/>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4	(사명 또는 날인)	직계존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존속]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checkbox"/>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checkbox"/>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5	(사명 또는 날인)	직계비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비속]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checkbox"/>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checkbox"/>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6	(사명 또는 날인)	대리인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대리인(위임받은 자)]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checkbox"/>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checkbox"/>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계	명			

붙임 6-2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2일
후 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증명발급대상 직계 준비속	명단 별지 * 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은 별지로 첨부하여 후보자의 서명 또는 도장(위임의 경우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간인 날인				
증명발급대상기간		최근 5년간			
제 출 처	선거관리위원회	용 도	공직선거후보자용		
위 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임 장 (위임하는 경우)					
위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 (성명)			(인감도장)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 계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주의사항 1.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위임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위 위임장과 함께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하여 드립니다. (후보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2. 다른 사람의 인감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별 지 >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 명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사명 또는 날인)	본 인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input type="radio"/>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radio"/>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radio"/>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2	(사명 또는 날인)	배우자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배우자] <input type="radio"/>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radio"/>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radio"/>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3	(사명 또는 날인)	직계존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존속] <input type="radio"/>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radio"/>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radio"/>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4	(사명 또는 날인)	직계존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존속] <input type="radio"/>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radio"/>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radio"/>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5	(사명 또는 날인)	직계비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비속] <input type="radio"/>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radio"/>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radio"/>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6	(사명 또는 날인)	직계비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비속] <input type="radio"/>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radio"/>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radio"/>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7	(사명 또는 날인)	대리인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대리인(위임받은 자)] <input type="radio"/>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radio"/>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radio"/>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계	명			

붙임 10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당적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1. 추천선거구명
2. 후보자 성명 (한 자)
3. 당적변동연월일
4. 당적변동내용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주 : 당적변동내용은 당적이탈·변경, 이중당적보유 등으로 기재합니다.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후보자 사퇴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후보자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사 퇴 사 유

본인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20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 ○ ○ 인

○○당이 추천한 위의 후보자가 사퇴함을 승인합니다.

2020년 월 일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후보자의 사퇴승인은 정당추천후보자에 한합니다.

붙임 12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다)]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교부 신청서

투표구명	명부의 종류	사본의 종류	비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사본작성비용 원

2020년 월 일

신청인 { 후 보 자 ○○○ ①
 { 선 거 사 무 장 ○○○ ①
 { 선 거 연 락 소 장 ○○○ ① }

○○구·시·군의 장 귀하

- 주 1. 신청인은 신청대상투표구명과 명부의 종류(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사본의 종류(일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중 1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3

[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가)]

(투표참관인) ·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1. 후보자성명(정당명)
2. 참관인 인적사항

투표소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참관일자	비고

(투표참관인) · (사전투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0년 월 일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후	보	자	○ ○ ○	인
[선	거	사	무	장
[○ ○	선	거	연	락
[소	장
[○ ○ ○	인

○○읍 · 면 · 동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투표참관인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참관인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비고"란에는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 지정순위(1, 2)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사전투표참관인은 신고서 "참관일자"란에 참관인별로 참관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14

[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가)]

개표참관인 신고서

1.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
2. 참관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직업	비고

위와 같이 개표참관인을 신고합니다.

2020년 월 일

신고인	○	대 표 자	○ ○ ○	당 인
	○	후 보 자	○ ○ ○	인
	○	선 거 사 무 장	○ ○ ○	인
	○	○ ○ 선 거 연 락 소 장	○ ○ ○	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이 신고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해당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후보자 또는 그 선거 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구·시·군위원회에 2개소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개표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제1개표소 개표참관인신고서).
3. 국회의원선거에서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16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공동설치)·(변경) 신고서

1. 후보자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명칭	소재지	(설치)·(공동설치)· (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비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공동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0년 월 일

○ ○ 당 인

신고인 { 대 표 자 ○ ○ ○ 인 }

(후 보 자) ○ ○ ○ 인

(선 거 사 무 소 장) ○ ○ ○ 인

(선 거 연 락 소 장)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명칭”란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공동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17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명칭	소재지	(설치)·(변경)	연월일	정당선거사무소장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장은 ○○당의 당원임을 확인합니다.

덧붙임 : 정당선거사무소인영등 매. 끝.

2020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표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명칭"란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앞에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명을 붙입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과 교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 지>

정당선거사무소 인영 등

○○당 ○○정당선거사무소	인영
정당선거사무소장 ○○○	인영

붙임 18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선임)·(겸임)·(변경) 신고서				
문서번호				
회계책임자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치자금 예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입용				
지출용				
<p>「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 인</p>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2.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예금계좌 개설 신고 시) 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4.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변경신고 시) 				
<p>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p> <p>2.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합니다.</p> <p>3.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대표자, 후원회대표자, 공식선거의 후보자, 선거연락소장이 됩니다.</p>				

< 별 지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성 명	(한 자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택)	(휴대폰)
<p>본인은 ()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 인</p> <p>○○○ 귀하</p>		
<p>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합니다.</p>		

붙임 18-1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비 고
변경전	수입용			
변경후	수입용			
	지출용			
	지출용			
<p>「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인)</p>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p>				
<p>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p> <p>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대표자, 후원회대표자, 공식선거의 후보자, 선거연락소장이 됩니다.</p> <p>3. 예금계좌 신고시에는 “변경후”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p>				

붙임 18-2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 거 비 용 제 한 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p>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 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선거 후보자 ○ ○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인</p>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주 : 1.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회계책임자의 변경시 선거비용제한액에서 전임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범위 내에서 약정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p>	

붙임 18-3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인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인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인계·인수내역				
인계·인수연월일	년 월 일			
<p>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정치자금법」 제35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계자(직위) 전 회계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인수자(직위) 현 회계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입회자(직위) ○○○ (인)</p>				
<p>주 : 1. 인계·인수서는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마다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회계책임자가 변경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p> <p>2. “인계·인수내역”란에는 재산, 정치자금의 사용잔액, 회계장부, 예금통장·체크카드, 후원회인·그 대표자 직인, 구입·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및 정치자금영수증(원부포함)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으로 하되, 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p> <p>3. “입회자”란에는 선임권자가 서명·날인합니다.</p>				

붙임 19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 신고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선임)·(공동선임)· (해임)·(교체)	연월일	일련 번호	비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을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1. 후보자의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1부

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영신고서 :○매

2020년 월 일

신고인	○	표	○	당 인
	대	자	○ ○ ○ 인	
	후	자	○ ○ ○ 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 ○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선거사무소에는 그 관할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외에 5명의 선거사무원을 추가로 더 둘 수 있습니다(선거연락소는 제외함).
2.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을 구분하여 적되, 배우자등을 신고하는 때에는 "배우자"·"(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으로 적습니다.
3.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사무장 또는 그 상급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신고할 수 있고, 활동보조인은 해당 선거사무장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5. "일련번호"란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습니다.
6. 신고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따로 만들어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쪽 사이에는 신고인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7.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원을 신고하는 경우 "직업"란에 "정당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의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회의원"으로 기재하고 신고인이 해당 신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선거사무원수 미산입" 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9. 활동보조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2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라)]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 신청서

1. 분실자 인적사항

- 가. 신 분 명 : (직업 :)
- 나. 성 명 :
- 다. 생년월일(성별) :
- 라. 주 소 :

- 2. 분실일시 :
- 3. 분실장소 :
- 4. 분실사유 :

위와 같이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분실자	○	○	○	인
	(선임자)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후 보 자)	○	○	○	인
	선 거 사 무 장	○	○	○	인
	○○ 선거 연락소장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직업”란은 「공직선거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신분명”란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활동보조인·배우자·직계존비속 중 해당 신분을 적습니다.
- 3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붙임 22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나)]

(선거벽보) · (선거공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정당명:
3. 후보자 성명:
4. 제출내역:

품 명		작성수량	제출하여야 할 수량(가)	제출수량 (나)	부족수량 (가-나)	첨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	비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책자형						
	일반형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벽보) · (선거공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인	{	○	○	당	인
	{	대 표 자	○○○		인
	{	후 보 자	○○○		인
	{	선 거 사 무 장	○○○		인
		○○선거연락소장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수량”란과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을 각각 적습니다.
2. 후보자정보공개자료(법 제65조제9항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말합니다)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부족수량에 그 100분의5를 더한 수를 적습니다.
3. “제출수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4. “첨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란은 제출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붙임 23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라)]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삭제 요청서

선거명		선거구명
(정당)	성 명	소속정당명
(후보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1. 정정 또는 삭제 매수
2. 정정 또는 삭제할 내용
3. 정정 또는 삭제 이유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64조제5항)·(제65조제12항)에 따라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내용을 정정(삭제)하고자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위 (정당)·(후보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이 신청서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정 또는 삭제 매수”란에는 선거구 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매수 중 정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매수를 모두 기재합니다.

붙임 24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1. 인적사항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세)	직 업	학 력	경 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 세금납부·채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채납실적(천원)				후 보 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채 납 내 역		
		채납액 누계	현 채납액	
계				
후 보 자				
배 우 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소명서

--

- 주: 1. 후보자 성명은 한글로 적고, 학력은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으며, 직업·경력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재산상황"은 후보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별로 각 신고대상재산의 가액을 총액으로 적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한 경우에는 "고지거부"라고 적습니다.
3. "병역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
- 가.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처분 내용
 - 나.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는 군별, 계급, 전역·소집해제사유
 - 다. 복무중인 신고대상자는 군별 및 계급과 "복무중"이라 기재
 - 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증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은 그 병역처분 내용
4. 세금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란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월(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발급받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되,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건당 10만원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합니다.
5. "전과기록"은 후보자 본인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죄명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를 적습니다(실효된 형을 포함함).
6. "소명서"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에 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만 그 란을 만들고 소명하려는 내용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7.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둘째면에 적되, 그 면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내용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8.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적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붙임 25

[별지 제17호서식의(마)]

(선거벽보)·(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이의제기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선거법상 신 분	
	전화번호			
이의제기 대상자	선 거 명		후보자성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p>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벽보(「공직선거법」 제64조제6항)·선거공보(「공직선거법」 제65조제12항)]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이의제기자 ○ ○ ○ ①</p> <p>붙 임 : 증명서류 1부</p>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 주: 1. “선거법상 신분”란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선거인 등을 적습니다.
 2. “이의제기 내용”란에는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벌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및 그 게재내용을 적습니다.
 3.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2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례]

(후보자)·(정당)의 방송연설 신고서

연 설 자			방송시설 구 분	방 송 시설명	이용일시 (부터 ~까지)	소요시간	비 고
성 명	명 부 순 위	주 소 (전 화)					
			텔레비전				
			라 디 오				
			텔레비전				
			라 디 오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71조 제10항)·(제13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정당)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부

2020년 월 일

신청인 [○ ○ 당 인]
 [대표 자 ○ ○ ○ 인]
 [후 보 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이 신고서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 연설의 신고 시에 사용합니다.
2. “이용일시”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연설자”란을,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에 있어서는 “명부순위”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비고”란에는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으로 기재합니다.

붙임 27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나)]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용·라디오용) 제출서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선거구)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방송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기 호
2. 소속정당명
3. 후보자성명 (한자)
4. 생년월일 . . 생(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덧붙임 : 사진 매.

2020년 월 일

제출인 후보자 ○ ○ ○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사진은 텔레비전방송용이며 5센티미터×7센티미터의 천연색사진으로 하되,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하며, 그 매수는 텔레비전방송시설의 수에 상당하는 매수이어야 합니다.

<별 지>

경력방송용 사진파일 규격

1. 디지털 사진(jpg파일) 촬영 규격

- 해상도 : 600dpi
- 5인치 x 7인치 (12.7cm x 17.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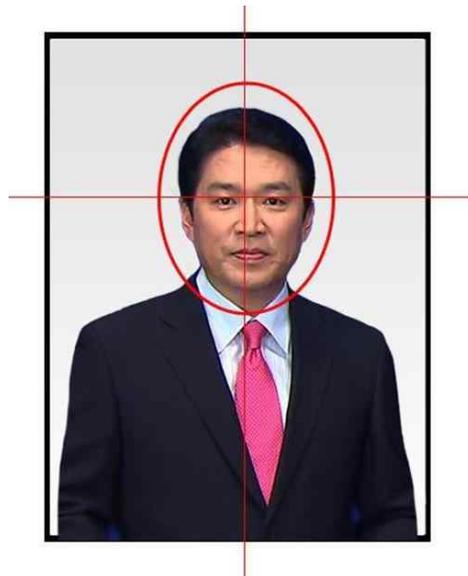
2. 원고 부착용 사진 규격

- 명함판 사진 부착

※ 디지털 사진과 인화하여 원고에 부착하는 사진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사진 촬영 시 준수 사항>

- 넥타이선의 배꼽 아래 까지 촬영
- 양쪽 어깨선이 다 보이도록 촬영
- 얼굴과 몸은 정면을 향하도록 촬영
- 인물의 배경은 흰색(white)으로 촬영
- 칼라사진



붙임 28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표지교부 신청서

구 분		신청수량	종류	규모(규격)	비고
현수막					
선거벽보 등 부착용	자동차				
	선박				
공개장소연설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현수막)·(선거벽보 등 부착 자동차·선박)·(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표지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후보자 ○○○ 인

선거사무장 ○○○ 인

○○선거연락소장 ○○○ 인

신청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현수막”, “선거벽보 등 부착용 자동차·선박” 및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음기”의 종류 및 규모(규격)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종류는 버스, 소형버스, 트럭, 승용차 등으로 구분하고, 규모는 승차 인원, 톤수 등을 기재합니다.
3. “녹화기”의 종류는 정보트론, 멀티비전 등으로 구분하고 전체화면의 크기(규격)를 ‘m’로 표시합니다.
4. 비고란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부착한 자동차”에 있어 그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붙임 28-1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현수막 등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표지 번호:
2. 분실일시:
3. 분실장소:
4. 분실사유: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른 선거벽보 등 부착 자동차·선박)의 표지를 (잃어버려)·(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후	보	자	○	○	○	인						
신청인	—	선	거	사	무	장	○	○	○	인			
	—	○○	선	거	연	락	소	장	○	○	○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분실장소와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2. 표지를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4.는 적지 않습니다.

붙임 29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나)]

대담·토론회 참석승낙서

1. 주최단체명
2. 개최일시
3. 대담·토론 참가자
 - 가. 참가자별 : (후보자)·(대담·토론자)
 - 나. 성명
 - 다. 생년월일(성별)

위 본인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귀 단체가 개최하려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 대담·토론의 참가자로서 참석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0년 월 일

승낙인 후 보 자 ①

(단체) 귀중

붙임 30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서

1. 주 최 자

가. 단 체 명 :

나. 대표자성명 :

다.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라. 회 원 수 :

마. 설 립 근 거 :

2. 개최일시·장소

가. 개 최 일 시 : 2020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 최 장 소 :

다. 참석예정자수 :

3. 대담·토론의 주제 및 사회자·진행절차

가. 주 제

나. 사회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다. 진행절차(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함)

(1) 참가자별 발언시간 : 분(1회기준)

(2) 참가자별 발언횟수 : 회

(3) 대담·토론의 진행순서(참가자의 발언순서 포함)

4. 대담·토론 참가자(후보자)명단

후 보 자			비 고
기호	소속정당명	성 명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초청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공직선거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1. 대담·토론 참가자의 승낙서 부.

2.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계획 부(필요시 덧붙임).

2020년 일 일

신고인(○ ○ 단체 대표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31

[토론위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개최일시
3. 대담·토론회 참석자
 - 가. 참석자별 : 후보자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성별)

위 본인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후보자 ○○○ 인
 ○○당 대표자 ○○○ 직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붙임 32

[토론위규칙 별지 제4호서식]

대담·토론회 불참사유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후보자 성명

위 본인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불참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증빙자료 ○부

2020년 월 일

[후보자 ○○○ 인
○○당 대표자 ○○○ 직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붙임 33

[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서

요청인 인적사항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요청사항	위법정보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주소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요청내용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위반게시물의 (삭제)·(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2020년 월 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인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경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귀중

붙임 34

[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사항 통보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경영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요청일자	
요청내용	(삭제) · (취급의 거부 · 정지 · 제한)
통보사유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함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 · (취급의 거부 · 정지 · 제한) 요청서 사본 1부.

2020년 월 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36

[인터넷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반론보도 청구서						처리시간 48시간
청구인	정당명	대표자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후보자명 (입후보예정자)	선거명· 선거구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e-mail주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인터넷 언론사명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대표자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반론보도 청구대상		보도제목	보도일자	보도 게재위치(URL)	
<p>보도내용</p> <p>「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 } </p> <p style="margin-left: 100px;"> } 정당명 } 대표자 (직인) } 후보자 (인) } (입후보예정자) </p>						
<p>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귀중</p> <p>구비서류 : 1. 인터넷언론사에 청구한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p>					수수료	
					없음	

주 : '보도내용'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37

[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신문광고계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교 부 신 청 수 량	비 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문광고계재인증서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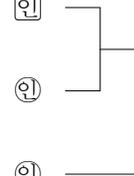
신청인



○○당 인

대표자○○○ 인

후보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38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 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

품 명	배부가능수량	배부수량	배부방법	비 고
정강·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38조)·(제138조의2)·(제139조)에 따라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 (2부)·(2권)·(각 2부)

2020년 월 일

제출인

○○당 인
대표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배부지역”은 배부할 선거구명 또는 행정구역명 등을 기재합니다.
 2. “배부가능수량”은 정강·정책홍보물의 경우 배부대상지역의 소속당원수를, 정당기관지의 경우 그 동안의 통상적인 배부수량을 기재합니다.
 3. 정책공약집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배부가능수량”은 “판매하려는 수량”을, “배부방법”에는 “판매하려는 장소”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권당 가격을 기재합니다.
 4. 정강·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의 제출은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붙임 40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1. 선거명 : 제21대국회의원선거(○○선거구)
2. 정당명 :
3. 후보자명 :
4. 청구내역

구분	청구액					비고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	합계	
후보자 자산						
후원회기부금						
정당의 지원금	보조금					
	보조금외					
합계						

5. 수령계좌명 : 은행(예금주명 :) 계좌번호 :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보전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덧붙임 1.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선거비용 과목) 사본 1부.
 2. 영수증 등 증빙서류(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사진 등 자료 포함) 1부
 3. 선거연락소별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사본(해당시) 부.
 4. 수령계좌 사본 1부.

2020년 월 일

청구인 후보자 ○ ○ ○ 인
 선거사무장 ○ ○ ○ 인
 회계책임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선거연락소가 있는 경우 선거사무소는 각 선거연락소의 보전청구금액을 기재하고, 선거사무소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거연락소는 선거연락소에 대응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당해 선거연락소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3. 선거연락소는 선거연락소분만 기재하여야 한다.
 4. 부담비용 청구시 적의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붙임 41

[정금규칙 별지 제50호서식]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1. 인계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인수자(정당,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기관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인계·인수사항

인계·인수금액	인계·인수방법

「정치자금법」 제58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반환·보전받은 비용 중 후보자 자산을 공제한 금액을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2020년 월 일

인계자 후 보 자 ○○○ 인

인수자 — ○ ○ 당 회 계 책 임 자 ○○○ 인 —

 — ○ ○ (공 익 법 인) 대 표 자 ○○○ 직인 —

 — ○ ○ (사 회 복 지 시 설) 대 표 자 ○○○ 직인 —

- 주 1. 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인계금액은 계좌이체 또는 수표발행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4 선거여론조사 안내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선거여론조사) 개념

-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해당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 등을 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널리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운동, 투표,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등 그 행위의 동기가 선거와 관계있는 사항에 기인하는 것임(대법원1996. 6. 14. 선고 96도405판결).

선거여론조사 사례 예시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도·인지도·선호도에 관한 여론조사 및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 ※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
- 정당의 당내경선, 정당 간 후보자 단일화, 후보자간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관한 여론조사
- 현역 국회의원 교체의사에 대한 여론조사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약칭 포함)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어 실시하는 선거공약·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19. 12. 17.)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

1.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법 제108조제3항, 제261조제3항)

- (1) 주 체 : 누구든지(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실시신고 제외대상

- ①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 ※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한 경우 의뢰를 한 제3자(후보자 등)가 신고
- ②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③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④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 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 ⑥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⑦ 위 ③~⑥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⑧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매년 1월 중 결정·공표

(2) 기 한 : 선거여론조사(비공표·보도용 포함)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내용 변경 시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내부 활용 목적으로 비공표용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의뢰)하는 경우에도 실시신고 의무

(3) 신고처 :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라 함)

○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시·도여심위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4) 신고사항 및 방법 등

○ 신고사항 : [별지] 예시 참조

○ 서 식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도움마당-자료실 (신청서식)] 참조

○ 신고방법 : 서면(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이용 가능)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금지되는 선거여론조사

-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여론조사 또는 거리 면접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법 제108조의 각종 의무사항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
-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부터 국회의원이 육성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법 제108조제2항, 제10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 선거일 전 90일(2020. 1. 16.)부터 국회의원 자신이 추진한 지역정책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0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 선거일 전 60일(2020. 2. 15.)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를 밝혀 선거여론조사 실시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2항 위반

나.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1호, 선거여론조사기준(이하 “기준”)제6조]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사항

- 경력 등을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불리하게 질문하는 행위
 -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경력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직업 또는 주요 경력 사용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 ②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부정적 어휘 등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문항을 작성하는 경우

-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
- ⑤ 그 밖에 ①~④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다.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2호, 기준 제4조, 제6조)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사항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는 행위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지 않은 행위
 -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히거나 「공직선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 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외

라. 사행성 조장 방법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3호)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마. 피조사자 성명 공개 불가(법 제108조제5항제4호, 기준 제7조제3항)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바. 기타 유의사항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금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 사용 금지
-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 금지
 - ※ 예시) 입후보예정자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설문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선거 여론조사를 생성한 후 웹사이트 방문자가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3도5279)
- ‘공표’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에 해당(대법원 1998. 12. 10. 선고 99도3930 판결)
-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언급은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
예시) “현재 상대 후보를 이기고 있다”, “오차범위 넘어선 우세”, “역전되었습니다” 등

가. 정당·후보자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12항, 법 제256조제1항)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행위(아래의 경우 공표·보도 불가)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공표·보도 가능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이란 법 제8조의9에 따라 관할 여심위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를 말함.

○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3)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 선거일전 6일(2020. 4. 9.)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1항)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위 공표금지 기간 중 공표하는 경우 공표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라.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비용의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1)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2) 대 상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실시 선거여론조사

(3) 횟 수 : 4회 초과분부터 산입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법 제122의2).

마.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선거여론조사기관 사전 통보(법 제108조제7항, 기준 제15조)

(1) 주 체 : 의뢰자

(2) 내 용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최초 공표·보도 전 조사결과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선거여론조사 의뢰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최고 1,500만원 부과(법 제261조)

바.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8항, 기준 제17조)

(1) 주 체 : 누구든지

(2) 내 용

-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하여야 함.
- 관할 여심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1) 주 체 : 누구든지

(2)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
경선에 앞서 컷오프 대상자 파악 또는 경선 후보자의 경쟁력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등을 의미함.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주소·
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됨.

아. 동일인의 중복응답 또는 지시·권유·유도(법 제108조제11항제2호)

(1) 주 체 : 누구든지

(2) 내 용

- 선거여론조사에서 착신 전환 등 방법으로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됨.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도 본조에서 규율하는 선거여론조사의 범위에 포함됨.

자 여론조사결과 공표 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법 제108조제6항, 기준 제8조, 제18조의2)

(1) 주 체 : 누구든지

(2) 준수사항

○ 최초 공표·보도(12가지)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시,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 포함), ⑨ 응답률, ⑩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⑪ 표본오차, ⑫ 질문내용

○ 인용 공표·보도(4가지)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다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 공표·보도(5가지)

- ① 분석의뢰자, ② 분석기관·단체 ③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④ 분석방법, ⑤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 분석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 여론조사 실시신고서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4항)

(1) 신청자 : 신고내용에 대한 관할 여심위의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

(2) 방 법 : 서면[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심의규칙'이라 함)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가능(심의 규칙 제19조제1항)

(3) 신청처

-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시·도여심위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9항)

- (1)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 (2) 방 법 : 서면(심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심의규칙 제19조제2항)
- (3) 신청처 : 위 ‘가. 3)’와 같음.

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자료제출 요구 가능
- 인용·기각·각하 결정 후 신청인 등에게 통지
- 법 위반 혐의 인정 시 해당 여심위에서 조치
 - ※ 기타 선거여론조사 관련 세부 사항은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참조

【별지】

〈 신고서 작성 예시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 상 신분		
홍길동	1900년 0월 0일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	02)0000-0000	후보자		
2. (조사기관·단체)·(선거여론조사기관)						
가. (기관·단체명)·(선거여론조사기관명) : ◇◇◇ 리서치						
나. 대표자 성명 : □ □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서울시 00구 00로 0 (전화번호 : 02-▽▽▽-▽▽▽▽)						
3. 조사 목적 : 00선거(00선거구명) 후보자 지지도 조사						
4. 조사 방법 등						
조사지역	조사일시	표본의 크 기	조사방법	피조사자 선정방법	공표·보도 여부	기타
전국	2020. 1. 28. 10:00~21:00 2020. 1. 29. 15:00~20:00	1,000명	전화면접조사 (유·무선 전화 병행)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RDD(유선, 무작위 추출)	여, 부	
5. 전체 설문내용 : 별지 첨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홍 길 동 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I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준수사항

□ 개인정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이용 준수사항에 위배

□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선법 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공선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전자우편, 전화, 문자) ※ 문자는 선관위 신고된 1개 번호로 8회 이하	공선법 제59조 공선법 제82조의4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이메일·문자메시지 전송 및 직접 통화 시 준수사항

-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명시해야 함(공선법 제82조의5)
- 문자메시지 전송 시 선관위 신고된 1개 번호로 8회 이하(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 포함)로 보내야 함(공선법 제59조제2호)
- 직접 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는 금지됨(공선법 제109조제2항)

□ 정보주체의 수집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①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 개인정보 보호법 상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요구와 관계없이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함
- 이를 위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수집출처 요구에 대비하여 수집출처별로 개인정보를 구분·범주화하여 관리
 - ※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당초 수집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 정보주체의 열람·삭제 등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등)
 - 공선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서는 아니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수신거부나 정보 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개인정보를 PC에 보관할 경우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각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조치 필요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공개(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후보자 또는 보좌관)를 지정·공개해야 함

II 주요 위반사례

1. 선거운동 메시지는 발송하고, 수신거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문자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 메시지는 전송자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방법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함
- 따라서, 선거운동 메시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2. 선거사무소가 전화번호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 시 수집출처와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 등을 즉시 알려야 함
- 따라서, 전화번호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잘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포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 수신 거부하였음에도 번호를 바꿔가면서 계속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 번호로 최대 8회까지 발송 가능하며,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전송할 수 없음
- 따라서, 선관위에 미신고된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행위 및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 (미신고 전화번호, 8회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4. 선거홍보 메시지 발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매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

-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타 업체에 선거사무소가 매매 등을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 아파트 주차차량 등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

- 아파트 주차차량 등에 공개된 연락처 등은 사회통념상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아닌 한 선거 관련 문자발송 등에 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5,000만원 이하 과태료

6 선거사무관계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 고용·산재보험 관련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관계법

-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방법	<p>▶ 4대 사회보험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관 중 한 곳 또는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p> <p>◎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p> <p>◎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자격취득(고용)신고서」 제출</p> <p>◎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 제출</p> <p>◎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및 「보수총액신고서」 를 제출</p>	
보험료 부담	<p>•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보험료율 : 16 / 1,000)</p> <p>•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료율* : 2.5 / 1,000)</p> <p>* 규모별 보험료율 상이 2.5~8.5/1000, 150인 이하 2.5/1000</p>	<p>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종류 보험료율 : 9 / 1,000) (출퇴근재해료율 : 1.5 / 1,000)</p> <p>※ 위 사항은 '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에 따라 사업종류 '각급사무소'의 예시로, 가입시점 및 사업종류에 따라 요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상 보험료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월 보수액이 1,000,000원인 경우 - (사업주 부담분) 10,500원 ※ 1,000,000(보수액)×10.5/1,000(요일) - (근로자 부담분) 8,000원 ※ 1,000,000(보수액)×8/1,000(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월 보수액이 1,000,000원인 경우 - (사업주 부담분) 10,500원 ※ 1,000,000(보수액)×10.5/1,000(요일)
납부 방법	월납	
납부 의무자	사업주	

-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액이 징수(단,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최대 5배) 될 수 있습니다.

▶ 사무대행기관 이용 안내

- 서면 :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보험사무 위탁계약 체결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 보험사무대행기관 검색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고객소통→민원/조회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표

개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 사항	기준 일	관계법조
'19.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 §218①, 규 §136의2
11. 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 §4, §60의2①, 규 §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 §218의4, 6 규 §136의4, 5
12. 7.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 §51①②, 규 §26의2③
12. 17.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 §60의2①
'20. 1. 16.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 §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월)]까지	법 §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111
2. 15.까지	토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 §218의5, 6 규 §136의4, 5
2. 15.부터 4. 1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86②
2. 26.부터 3. 6.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 §218의8, 9 규 §136의8, 9
3. 16.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 §218의13①
3. 24.부터 3.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 §37, 규 §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 §38, 규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 §65⑤
3. 26.부터 3. 27.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 §49, 규 §20
4. 1.부터 4. 6.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 §218의17①⑦, 규 §136의15
4. 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 §64②, 규 §29④
4. 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 §33③
4. 3.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 §65⑥, 규 §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 §64②, 규 §29②⑤
4. 3.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 §44①
4. 5.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 §65⑥, 154①⑤, 규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 §65⑥, 153①, 규 §76
4. 7.부터 4. 10.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 §158의3
4. 10.부터 4. 11.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 §155②, §158
4. 15.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7.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 §122의2①, 민법 §161 규 §51의3①
6. 14.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 §122의2①, 규 §51의3②

▣ 세부일정

※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은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병법”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병령”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토론규”로 각각 약기함.

• 재외선거 :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상시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상시	법\$112 ~ \$117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서면신고(정당·방송·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 등은 제외) ※ 여론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누구든지	상시	법\$108③
'19. 8. 19.(월)까지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중앙위원회 지명위원) <중앙위원회에>	공관	재외위원회 설치 개시일전 60일까지	법\$218② 규\$136의2①②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정당·공관장 추천위원) <중앙위원회에>	정당, 공관		
'19. 10. 18.(금)부터 '20. 5. 15.(금)까지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재외위원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천재지변 등의 발생에 의한 재외위원회 미설치· 재외선거사무 수행 중지 결정·공고 및 통지 등 <정당·후보자, 해당 재외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결정일	법\$218의29 규\$136의29
'19. 10. 18.(금)까지	재외위원회 위원 위촉	중앙위원회		법\$218② 규\$136의2③
	재외위원회 명칭·관할구역 등 공고	중앙위원회	선거일 전 180일까지	법\$218⑧ 규\$136의2⑤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개설·공고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법\$218의4④
	재외위원회 간사·서기 위촉·보고 <중앙위원회에>	재외위원회	위촉한 때 지체없이	법\$218⑥ 규\$136의2⑦
'19. 10. 18.(금)부터 '20. 4. 15.(수)까지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정당·후보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등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9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90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누구든지		법\$93①
'19. 11. 4.(월)부터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법\$49⑩ 규\$20⑦
'19. 11. 15.(금)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조의2① 규\$2①②
'19. 11. 16.(토)까지	공관부채자신고인명부 등 작성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재외위원회, 구·시·군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 지체없이	법\$218의34①, \$39② 규\$12①
'20. 2. 15.(토)까지	재외선거인(변경)등록신청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19. 11. 17.(일)부터 '20. 2. 15.(토)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6,8 규§136의4,5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정비	중앙위원회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정비결과 안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중앙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즉시	법§218의7 규§136의6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신고서 송부 <구·시·군의 장에게>	중앙위원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접수 후	
'19. 12. 7.(토)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법§122 규§26의2③, §51①②
'19. 12. 10.(화)까지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 포함) 등 선상투표 선박현황 통보 <중앙위원회에>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현황 기준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후 10일까지	규§10의3②
'19. 12. 16.(월)부터 '20. 5. 15.(금)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8의2, §8의3
'19. 12. 17.(화)까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일전 120일까지	법§53⑤
'19. 12. 17.(화)부터 '20. 5. 15.(금)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관할위원회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 지체없이[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③ 정규법§34①④ 정규규§32②, §34①
'19. 12. 17.(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12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0. 1. 3.(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20. 2. 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법§60의2②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규\$24②
	피선거권 조회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법\$60의2③ 규\$26②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지체없이	법\$61①, \$63① 규\$28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지체없이	법\$62③④, \$63① 규\$28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려는 때	법\$60의3② 규\$26의2①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규\$2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정규법\$34①③, \$35① 정규규\$32②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한 때	정규법\$34④ 정규규\$34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수화에 걸쳐 발송하려는 경우 최초신고시 일괄신고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전 2일까지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	법\$60의3① 규\$26의2⑤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간 즉시	법\$60의4①③
	예비후보자 당적조회(시·도위원회 일괄조회 가능) <정당에>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매월말일 및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 기준	법\$60의2⑨ 규\$26⑤
'19. 12. 17.(화)부터 '20. 4. 15.(수)까지	시·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시·도위원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의3② 규\$2의4①
'19. 12. 24.(화)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3개월까지	규\$10의3①
'20. 1. 1.(수)부터 4. 1.(수)까지	정당·정책의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중앙당대표자	방송일전 3일까지 (방송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까지)	법\$137의2①⑦ 규\$60의2
'20. 1. 15.(수)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제공 <선박회사에>	중앙위원회	선거일 전 3개월까지	규\$10의3③
1. 16.(목)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90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는 선거일전30일)까지	법\$53①②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해당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9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60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1. 16.(목)부터 3. 25.(수)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법§82의3①
1. 16.(목)부터 4. 15.(수)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법§103⑤
	의정활동 보고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 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①
1. 16.(목)부터 3. 15.(일)까지	당원집회 개최 신고 <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	선거일전 90일부터 개최일전일까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금지)	법§141①② 규§63①
1. 16.(목)부터 4. 1.(수)까지	정당·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광고전까지(광고게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137①③
1. 16.(목)까지	재외국민수 현황 통보 <재외위원회에>	공관의 장	선거일전 90일까지	규§136의16①②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명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국방부장관		
1. 31.(금)까지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결정·공고	재외투표관리관 (2이상 공관을 둔 국가는 대사관)	매년 1월 31일까지	법§218의5④
2. 15.(토)까지	재외선거안내문 작성·게시 <중앙위원회, 공관 홈페이지 등에>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18⑤ 규§136의19①
	추가 재외투표소(병영내 투표소) 설치 여부 결정	재외위원회		규§136의16③
2. 15.(토)부터 4. 1.(수)까지	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지방의원선거는 제외함]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82① 규§45④
2. 15.(토)부터 4. 15.(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15.(토)부터 4. 25.(토)까지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	각급위원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법§10의2② 규§2의3②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	중앙위원회		법§10의3① 규§2의4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운영	구·시·군위원회		법§146의2 규§67①
2. 16.(일) 이전부터	후보자 거주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 [지방선거에 한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법§16③
2. 16.(일)부터 4. 6.(월)까지	재외선거관리록 비치·작성	재외투표관리관	선거일 전 59일부터 재외투표기간 만료일까지	법§218의22③
2. 26.(수)부터 3. 6.(금)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규§136의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218의9 규§136의9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작성 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36의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중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규\$136의9⑥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규\$136의8④
	재외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앙위원회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36의8③, \$136의9⑥
	재외선거인명부 등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재외투표관리관에게>			
3. 4.(수)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안내	명부작성권자 재외투표관리관	열람개시일(3. 7.)전 3일까지	법\$218의34①, \$40③
3. 7.(토)부터 3. 11.(수)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명부작성권자, 행정안전부장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선거일 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 규\$136의10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열람기간중	법\$218의11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에게>	명부작성권자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②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1⑤, \$218의34①, \$42②
3. 12.(목)부터 3. 1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누락자 등재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해당 선거권자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재외선거인 명부 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법\$218의11③
	재외선거인명부 등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에게>	명부작성권자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1③, \$218의34①, \$43②
3. 3.(화)부터 4. 1.(수)까지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을 위한 언론기관의 지지율 여론조사결과 수집기간	언론기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82의2④ 토론규\$22
3. 13.(금)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법\$65⑦
3. 14.(토)까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공고	중앙위원회		규\$11⑥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전 10일까지	법\$38③
3. 16.(월)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해당 기관에>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	선거일전 30일까지	법\$53②④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3. 16.(월)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 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송부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회사	선거일전 30일까지	규\$10의3③
	선박에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 비치	선장	선상투표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후	규\$10의3④
3. 16.(월)까지	읍·면·동위원회의 대행할 직부의 범위·대행기간 등 결정·공고·통지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30일까지	법\$13③ 규\$3③④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일(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법\$71⑤ 규\$36①
3. 16.(월)까지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 <관할 토론위원회에>	공영방송사	선거일전 30일까지	토론규\$27②
3. 16.(월)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 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위성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일까지	법\$218의14①, \$71⑤ 규\$36①
3. 16.(월)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중앙위원회	선거일 전 30일	법\$218의13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확정 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명부 확정 후 즉시	법\$218의13② 규\$136의11①
	재외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중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규\$136의11②
	재외선거인명부등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즉시	법\$218의13③ 규\$136의11③
	해당공관 관할구역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들의 재외투표소명부 출력 또는 전산자료 보관 등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소명부 송부 받은 즉시	규\$136의11④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명부작성권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4④, \$136의33①
3. 21.(토)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	법\$60의3④
3. 21.(토)부터 3. 27.(금)까지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시까지	법\$48②④
3. 23.(월)까지	선거벽보, 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통지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법\$64③, \$65⑫, \$66⑧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통지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통지는 후보자등록 시에)	법\$71⑥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3. 23.(월)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3일까지	법\$218의14①, \$71⑥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일까지	법\$31③ 규\$7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부대장, 경찰관서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법\$65⑤
3. 24.(화)부터 3. 28.(토)까지	선거인명부와 제외선거인명부등의 이중등재여부 확인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③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에 지체없이	법\$39② 규\$12①
3. 24.(화)부터 3. 28.(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선상 투표신고 대상자		법\$38① 규\$11①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38⑤⑥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관할구·시·군위원회에게>	군인·경찰공무원		법\$65⑤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0⑥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거소·선상투표신고 인명부 등본 (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법\$37④, \$38⑥
3. 26.(목)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열람 개시일 전 3일까지	법\$40③ 규\$13③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등재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확인기간 및 방법 등 공고	구·시·군의 장		법\$44②③
3. 26.(목)까지	제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제외위원회	선거일 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
3. 26.(목)까지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 <관할 토론위원회에>	공영방송사 외 지상파,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선거일 전 20일까지	토론규\$27③
3. 26.(목)부터 3. 27.(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시	법\$49④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규\$21
	기탁금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법\$49④, \$56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시	법\$71⑥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설치·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지체없이	법\$61①, \$63① 규\$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의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지체없이	법\$63① 규\$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임·교체신고시	규\$2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변경사유 발생후 지체없이)	정규법\$34①③, \$35① 정규규\$32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정규법\$34④ 정규규\$34①
	피선거권 조회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49⑧ 규\$20③
	전과기록 조회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법\$49⑩ 규\$20③
	정당·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후	법\$150③④⑤⑥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	규\$71①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구·시·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	법\$152②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보고 <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	법\$188②③⑤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54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사유발생시	규\$22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 <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통보<한국방송공사에>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55 규\$38⑦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추천정당에>	선거구위원회		법\$52④
	정강·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배부전까지	법\$138④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책공약집 2권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관할위원회에>	정당 (판매할 당부)	발간 즉시	법§138조의2③
	정당기관지 2부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발행 즉시	법§139③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광고전까지	법§69⑤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비용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방송시설경영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70③ 규§35①
	선거공약서 배부 신고<선거구위원회에>, 제출<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	· 신고 : 배부일 전일까지 · 제출 : 배부 전까지	법§66⑥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후보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때	법§67① 규§32②
	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중앙당, 후보자	방송일전 3일까지	법§71⑩ 규§36⑦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2③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 등의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려는 때	법§72① 규§37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의 표지 교부신청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려는 때	법§79⑥⑩ 규§43②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 <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	개최일전 2일까지	법§81③ 규§44①④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려는 때	법§91④ 규§48②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법§271② 규§145①
	불법인쇄물 공고 <관할구·시·군위원회 게시관에>	각급위원회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법§271② 규§145②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해당 우체국장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제외)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	법§272①
	불법선전물 우송금지 사실 통보<발송인>·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우체국장	우송을 중지한 때	법§272②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법§218의14①, §71⑥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정당	후보자등록 신청시	법§218의14④ 규§136의13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송부 <재외선거인등, 외교부, 공관에>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법§218의14④ 규§136의13
	무투표실시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위원회에>	중앙위원회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	법§188⑤ 규§136의28①

한 선거사무안내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사유발생 시 지체없이	법\$55 규\$136의28①
3. 27.(금)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까지	법\$73⑤ 규\$38②
3. 28.(토)까지	재외투표용지 원고 작성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8②④ 규\$136의18
	재외투표용지 모형 안내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법\$152 규\$75
3. 28.(토)까지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법\$46⑤ 규\$18④
3. 29.(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거소·선상투표신고기간만 료일의 다음날에	법\$44①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사항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규\$16①
	거소·선상투표신고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규\$16①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 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4④
3. 29.(일)까지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재외위원회에>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선거일 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법\$218의20④
3. 29.(일)부터 3. 31.(화)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40①②, \$41① 규\$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①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②
3. 30.(월)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법\$60의3①
	경력방송원고 송부 <한국방송공사(해당 지역방송국)에>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73①⑤ 규\$38②④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선거구위원회, 시도 또는 중앙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규\$38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없이	법\$74① 규\$39①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4②
	재외투표용지 원고(투표용지 발급기용 DB)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법\$218의18②④ 규\$136의17,18
	재외투표용지 원고 금고 등에 보관	재외투표관리관	송부받은 즉시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3. 31.(화)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신고 <관할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거소투표신고마감일후 3일까지	법\$149①
3. 31.(화)까지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개시일 전일까지(추가 투표소는 운영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218의17 규\$136의15⑤
4. 1.(수)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공고	구·시·군위원회	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	법\$149② 규\$70②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공고일 후 2일 이내	법\$149④
	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정당 등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 지체없이	규\$70③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신고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기표소설치일전 2일까지	법\$149⑤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공고	관할 구·시·군위원회	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	법\$149⑤ 규\$70④
	귀국투표 신고	재외·선상투표 기간 개시일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법\$158의3⑬, \$218의16③
4. 1.(수)까지	재외투표 회송참관인 선정·신고 <중앙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선거일전 14일까지	규\$136의23⑧
4. 1.(수)부터 4. 6.(월)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소투표록 작성	재외선거인등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법\$218의17,20 규\$136의15 법\$218의22 규\$136의20⑥, \$136의21③
	재외투표 및 재외투표소투표록 등 회송 <외교부 경유, 중앙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218의22④ 규\$136의23
	재외투표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재외투표 인수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③ 규\$136의23⑦
	공관개표소 설치사유 발생보고(사유발생시) <중앙위원회, 재외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사유발생시 즉시	법\$218의24③ 규\$136의25①
	공관개표소 설치 여부 결정(사유발생시)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의 보고를 받은 때	법\$218의24③ 규\$136의25②
	공관개표소 설치 공고 및 통지 등(사유발생시) <정당, 관할 선거구위원회, 해당 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공관개표소 설치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법\$218의24⑥ 규\$136의25②
4. 1.(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4. 1.(수)부터 4. 2.(목)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위원회에>	해당 선거권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법\$43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2.(목)부터 4. 3.(금)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구·시·군의 장, 신청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3②
4. 2.(목)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그 비용 납부 <구·시·군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제외)	법\$46②③⑤ 규\$18③
4. 2.(목)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법\$33③
4. 2.(목)부터 4. 14.(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59
4. 2.(목)까지	대담·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통지	구·시·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토론규\$23①
4. 2.(목)부터 4. 14.(화)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등의 대담·토론회 개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 방송연설회 개최	구·시·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		법\$82의2③
4. 2.(목)부터 4. 15.(수)까지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정당	방송일 전 3일까지	법\$71⑩, \$218의14① 규\$36⑦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 실시 통보 <중앙위원회에>	위성방송시설 경영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70③, \$218의14① 규\$35①
4. 2.(목)부터 4. 15.(수)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구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법\$49⑩ 규\$20⑤
4. 3.(금)까지	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정당,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구·시·군위원회	제출마감일후 2일(섬 및 산간오지는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해당 상급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정당·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법\$64⑥, \$65⑫ 규\$29⑦, \$30⑫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사전)투표소 입구에 첩부	상급위원회, 선거구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시	법\$64⑥⑦⑪, \$65⑫ 규\$29⑧, \$30⑫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 제출 ※ 합동토론회 개최동의서 제출	통지를 받은 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토론규\$23②
	토론회 등의 개최 공표·통지 <정당·후보자, 선관위에>	구·시·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	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토론규\$28
4. 3.(금)	선거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규\$16①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	규\$14③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법\$44의2①③ 규\$16의2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4.(토)부터 4. 15.(수)까지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구·시·군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시마다	규\$16의2⑤
4. 4.(토)부터 4. 15.(수)까지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44②
4. 5.(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읍·면·동위원회		법\$147⑧
	무투표 통지 <거소·선상투표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법\$188② 규\$109①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거소투표안내문 동봉)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군인 등 신청자에게 선거공보 발송	구·시·군위원회		법\$65⑥
	투표안내문 (접자형 포함) 발송 (선거공보 동봉) <매세대에>	읍·면·동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우편투표함 비치	구·시·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규\$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사전)투표소 투표의 뜻 통지 <해당 선거인에게>	구·시·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없이	법\$154② 규\$78②
4. 5.(일)부터 4. 15.(수)까지	재외투표함 설치 및 재외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 10일부터 선거일 오후6시까지	법\$218의23 규\$136의24
4. 6.(월)까지	선상투표용지 전송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했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54의2①
	선상투표 입회인 선정·통지 <선상투표자에게>	선장	선상투표일 전일까지	규\$86의2⑤
4. 6.(월)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첨부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48② 규\$68⑤
4. 7.(화)부터 4. 10.(금)까지	선상투표 및 선상투표지 팩시밀리 전송 <해당 시·도위원회에>	선상투표자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선상투표지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시·도위원회	선상투표지를 수신하는 기간 동안 매일 1회 이상	법\$158의3⑩ 규\$86의3③
4. 8.(수)까지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62② 규\$3③, \$88①
	투표용지 모형공고	구·시·군위원회		법\$152① 규\$75
4. 9.(목)까지	사전투표소 설비 (읍·면·동마다)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6일까지	규\$68④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 6일까지	법\$162③ 규\$3③, \$88①
	사전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	법\$162② 규\$88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10.(금)부터 4. 11.(토)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158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봉투 발송 및 관내사전투표함 구·시·군위원회 인계	사전투표관리관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법\$158⑥
4. 10.(금)까지	개표소 공고 [2개소 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통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② 규\$95②
4. 12.(일)까지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사유발생시) <재외위원회에>	보조급배분 대상정당	선거일 전 3일까지	법\$218의24⑤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선정(사유발생시)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 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4. 13.(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 규\$88①②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 규\$102①
	사전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	읍·면·동위원회	사전투표기간만료일 후 2일까지	법\$44의2④
4. 14.(화)까지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 및 팩시밀리 전송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재지 관할 시·도위원회에>	선장	선거일전일까지	법\$158의3⑧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 봉투 등 제출 <해당 시·도위원회에>	선장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법\$158의3⑧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 <읍·면·동위원회에→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법\$154③ 규\$78③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투표용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인계 <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법\$151① 규\$16의2③④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선거일 전일까지	법\$147① 규\$67의2
	투표참관인 선정 (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 고한 인원수가 4인 미만시)	읍·면·동위원회		법\$161③ 규\$88①
	개표소의 설비	구·시·군위원회		법\$173③ 규\$95①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81③ 규\$102
	공관개표소 설비(사유발생시)	재외투표관리관	개표일 전일까지	법\$218의24 규\$136의25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법\$161⑤ 규\$88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구·시·군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 규§102④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보관·인계시 입회	정당추천위원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인계 시	법§151⑤
선거일 4. 15.(수)	투 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 제10장
	거소·선상투표 및 사전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155⑤
	재외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218의23 규§136의24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장 이송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 후에	법§176③
	투표함 등 송부 <구·시·군위원회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법§170
	개 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 작성 등)	구·시·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법 제11장 법§218의24
	개표록 송부 <선거구위원회, 시·도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개표록 작성후	법§185① 규§106
	후보자별 득표수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정당별 득표수 및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 <상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②
	정당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집계록 작성·송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시·도위원회	개표록, 개표및선거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③
	정당별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④
당선인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188,§189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재외위원회	오후 6시 후에	법 제11장 법§218의24,25 규§136의25
4. 15.(수)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중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관계자등	선거일까지	법§60②
4. 25.(토)까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해당 당선인, 소속정당에>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10일 이내	법§193① 규§111
4. 27.(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④ 민법§161 규§51의3①
4. 29.(수)까지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선거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①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②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 <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지방선거]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220①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 <고등법원, 대법원에> [지방선거]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소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법§222② §223②
4. 30.(목)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해당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15일까지	규§25③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57②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선거구위원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57③ 규§25③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요청이 있는 경우)	법§49⑨
5. 5.(화)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20일까지	정금법§40①
5. 15.(금)까지	선거소송 제기 <대법원에>	선거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법§222①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법§57① 규§25①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중앙위원회 수입징수관에게 납입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30일 이내	법§57② 규§25②
	정치자금 회계보고 <해당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규§51의3①
	당선소송 제기 <대법원에>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법§223①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9④ 공병령§16
5. 22.(금)까지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 사본의 열람기간·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관할위원회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 인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제외) 위원·직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인터넷 (선거비용에 한함) 공개 <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	정금법§42②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 <해당 위원회에>	사본교부신청인	언제든지 [선거비용은 열람기간중] ※ 사본교부신청시 수입인지 첩부	정금법§42② 정금규§41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위원회에>	이의있는 자	열람기간중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관할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할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계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 등 공고·통지 <이의신청인에게>	관할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	정금법\$42⑧
5. 25.(월)까지	선상투표신고·선상투표에 사용한 찍시밀리 송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보전청구 <관할 시·도위원회에>	선박회사	선거일 후 40일까지	규\$86의4①
6. 14.(일)이내	선거비용 보전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법\$135의2⑤ 규\$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135의2⑤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선거구위원회	반환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법\$135의2⑥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선거구위원회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법\$135의2④ 규\$59의2③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규\$59의2③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없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정당·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위탁 <해당 중앙당·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선거구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265의2③
10. 15.(목)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 후 6월 이내	법\$60②